

---

# 2016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 과 보 고 서

---

2016. 8.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2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목차 및 명세 .....	5
1. 보수규정 개정 및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기관경고) ..	6
2. ☆☆★★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석관리 등 업무부당처리(징계) .....	15
2-1. ☆☆★★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주의) .	21
2-2. ☆☆★★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주의/통보) .....	24
3.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 등 업무 부당처리(징계) .....	28
3-1.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시정/통보)	38
3-2.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시정) .....	48
3-3. 보안업무 규정 제정 소홀(주의/통보) .....	51
3-4. 광고선전비 집행 부적정(주의) .....	54
4.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주의/통보) .....	56
5.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부적정(주의/통보) .....	75
6. 특별승진 심사 부적정(통보) .....	79
7.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경력검증 등 업무처리 소홀(주의) .....	82
8.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효율화 노력 미흡(통보) .....	84
9. ○○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주의/통보) .....	89
10.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시정/권고) .....	93
11.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소홀(주의) .....	103
12. ☆☆ 풍력발전기 제조구매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 및 교육 미이행(시정) ...	106
13. 예산성과금 지급 부적정(주의) .....	109

# 1.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6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의한 종합감사로 제주에너지공사의 제반 업무에 대한 점검·확인을 통하여 부당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음

## 2. 감사대상 및 범위

2013. 2월부터 2016. 4월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였음

## 3.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

2016. 4. 18.부터 같은 해 4. 27.까지 8일간 감사인력 7명(외부전문가 포함)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음

## 4. 감사 중점사항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감사는 풍력발전 사업 추진실태, 에너지관련 사업 운영 실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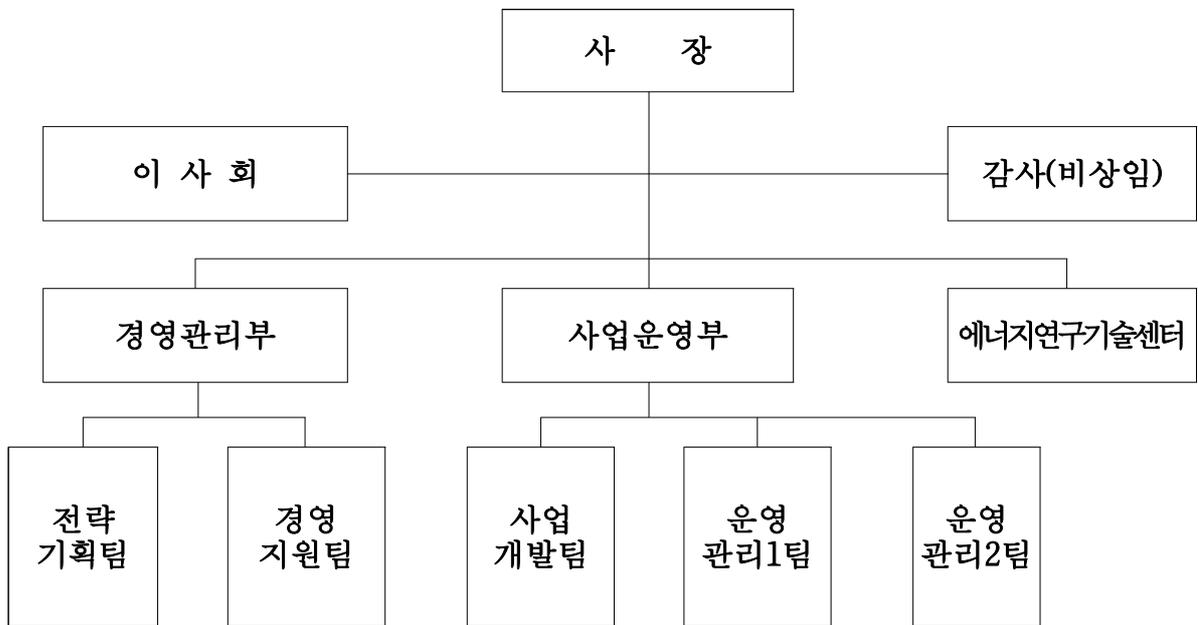
## 5. 감사결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내부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2016. 8. 16. 감사위원회의 의결(보고)로 최종 확정하였음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부·1센터·5팀



○ 정 · 현원(2016. 1. 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사장	1~2급	3급	4급	5급	6급	계약직
정원	42	1	1	2	7	15	11	5
현원	35	1	1	0	3	14	11	5

※ 도청 파견 공무원: ♀♀♀♀부장 1명

## 2. 재정현황

### ○ 2014년도

(단위: 백만 원)

수입			지출		
사업수입	전력판매	16,102	사업비용	영업비용	7,174
	이자수입	52		영업외비용	1,130
자본수입	차입금	16,300		법인세	1,000
				예비비	541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230	자본지출	투자자산	83
				유형자산	23,394
무형자산	112				
예비비	250				
합계		33,684	합계		33,684

### ○ 2015년도

(단위: 백만 원)

수입			지출		
사업수입	풍력발전전력판매	17,313	사업비용	영업비용	9,033
	태양광전력판매	90		영업외비용	1,127
	공급인증서판매	3,795		법인세	1,000
	이자수입	52		예비비	118
	기타영업외수익	3,500		투자자산	123
자본수입	공사채(차입금)	33,700 <sup>1)</sup>	자본지출	유형자산	39,764
	기타유동부채수입	159		무형자산	120
	기타자본적수입	-		유동부채상환금	159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		비유동부채상환금	6,250
				예비비	915
합계		58,609	합계		58,609

1) 2016년도 공사채 승인금액: 529억 원

○ 2016년도

(단위: 백만 원)

수입			지출		
사업수입	풍력발전전력판매	16,984	사업비용	영업비용	9,853
	태양광전력판매	63		영업외비용	1,206
	공급인증서판매	5,727		법인세	300
	이자수입	46		예비비	100
	기타영업외수익	207			
자본수입	기타유동부채수입	131	자본지출	투자자산	114
				유형자산	8,696
				무형자산	75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2,000		유동부채상환금	131
				비유동부채상환금	4,479
				예비비	204
합계		25,158	합계		25,158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목차 및 명세**

- 처분요구서 붙임

【일련번호: 1】

# 감사위원회

## 기관경고

제 목 보수규정 개정 및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연봉재계약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풍력발전단지 1단계 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 1.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위 기관에서는 직원 연봉계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3. 7. 31.부터 같은 해 9. 12.사이에 「보수규정」제5조2 및 “경력환산표”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하였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3년 7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경력직으로 채용된 위 기관 소속 3명에 대해 경력환산표를 잘못 적용하여 호봉 및 연봉을 과다 산정 하였으므로 경력환산표 적용율(20인 미만 기업, 불인정)에 맞게 재산정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불복하여 2013년 8월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0월 위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보수규정」의 경력환산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 경력환산표가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종전의 유사경력이 불합리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위 기관에서는 2012년 에너지 공기업으로 출범할 당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환산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 경력환산표는 재직 후에 불가피하게 경력환산을 다시 해야만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하여야 하고, 규정개정 시에는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명확히 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13. 7. 15. 감사위원회로부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 받자마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법률적 검토나 경력인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재 직무와 예전 직무의 유사성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타 기관과의 객관적인 비교 등 경력환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관 사규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달(날짜 모름) “병 경력 20인 이상”을 삭제하는 등 불리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4회에 걸쳐 이사회 심의의결과 2회에 걸쳐 도지사 승인을 받아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위 개정된 「보수규정」을 개정규정 시행일(2013. 9. 23.)부터 신규 채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 총 7명에게도 신규채용자로 소급 적용하여 경력을 재산정 하였다.

그 결과 [별표] “감사위원회 처분 및 보수규정 개정 경과” 와 같이 경력인정제도의 취지와 2013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가 무의미해지는 「보수규정」이 개정·시행되었고, 직원 총 7명에게 금전적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2. ☆☆★★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위 기관에서는 제주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읍장에게 사무위임)로부터 ☆☆★★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면적: 1,069,680㎡)을 대부 받았고, ★★리새마을회와 위 새마을회 소유의 부지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읍장으로부터 대부받은 토지 및 ★★리 새마을회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변전소 및 풍력 제어실 등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2014. 10. 28.과 2015. 3. 12. 각각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5. 8. 31.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변전소 및 풍력제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다만,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공유재산인 풍력발전단지 부지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절차를 정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읍장으로부터 대부받은 공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하여 영구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읍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대부조건인 영구시설물 설치 등은 일체 금지하도록 한 조건을 위배하게 되어 풍력관리실 등 632.69㎡(191평)에 대하여 위 기관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업무용재산(용도: ◀◀◀◀◀기술센터)으로 등기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5. 8. 31. ★★리새마을회와 사용 협약한 토지에 변전소 1,944.3㎡(580평) 건축을 완료하고서도 진입로 부지에 대한 지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관계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였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배하여 영구시설물이 설치되고, 「건축법」 규정을 위배하여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3. ○○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위 기관에서는 2015. 7. 7. 13:00경에 발생한 위 기관 소유 ○○ 풍력발전기 1호기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태풍 등에 의한 2차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블레이드·로터·나셀

분리 등의 긴급조치를 완료한 후 화재 원인 규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합동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같은 해 7. 15. 10:30경 화재발생 장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원인 결과를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5. 7. 7. 13:00경 화재 발생 후 위 풍력발전기 제작사와 현장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다음 날인 7. 8. 위 기관 소속 ◆◆◆◆팀장과 제작사 연구원이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7. 9.부터 7. 14.까지 5일 동안 2차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블레이드·로터·나셀 분리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였으며, 자체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7. 14. 보험금 청구에 따른 \*\*\*\*\*공제회와 손해사정기관의 현장 확인 및 다음 날인 7. 15. 합동현장조사반 현장조사를 각각 실시한 후 같은 해 7. 16.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발생 합동 조사 실시 결과를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7. 24. 위 기관 이사회에 ○○ 풍력발전기 1호기에 대한 화재 발생 후 조치 및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위 기관의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 발생에 따른 합동 현장조사반 주요 조사 사항에 따르면 화재 현장 상태 점검 및 보존, 화재 현장에서의 2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과 화재 원인 추정 및 정확한 화재 원인 추정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밖에 화재 원인 규명 및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 발생에 대한 ☼☼소방서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화재현장 조사결과 로터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패드)의 급격한 마찰열로 나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유리섬유 및 에폭시 재질의 나셀커버 및 블레이드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계공학적 설계 및 제조부품의 작동원리 상의

오류는 향후 제주에너지공사의 추가 조사 의뢰 결정 및 제조사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전문가 구성 등 제조사<sup>2)</sup> 의지에 따라 설계, 부품에 의한 작동 오류가 밝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위해 합동 현장조사반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기의 제작사를 조사반이 아니라 입회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합동현장조사반은 정확한 화재 원인 추정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여부 및 화재 원인 규명과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후 합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합동현장조사반 명의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동현장조사반을 구성하면서 풍력발전기 제작사를 합동현장조사반에 포함하였고, 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위 조사반이 화재 현장 조사 후 제시한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 내용만으로 조사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화재 원인을 결론 내는 등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화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종결<sup>3)</sup> 하였다.

그 결과 풍력발전기 화재 발생 원인이 풍력발전기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제작사에 특혜 제공 및 화재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

2) 제주자치도에서는 ○○풍력발전단지 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2호기가 2010. 10. 25. 15:14경 블레이드 파손, 화재발생, 발전기 추락, 타워 굴절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규명을 위하여 2010. 11. 2.부터 2011. 1. 31.까지(3개월) ☆☆☆☆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 풍력발전기 화재 및 파손 원인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원인 분석 등에서 규명된 사실을 국내 풍력산업기술 발전에 활용을 목적으로 화재발생의 원인을 조사한 내용을 수록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함.

3)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 사고 원인 조사결과 발표 후 \*\*\*\*\*공제회 회원 피해 보상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2015. 8. 26.)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풍력시설 공제금 금 1,405,763천 원을 수입 조치함

대한 논란을 야기 하였다.

#### 4. ☆☆★★★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위 기관에서는 2014. 6. 18.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토목·건축) 공사” 를 6,555,318천 원에 계약하여 2015. 8. 31. 준공처리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5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실시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 이상의 사토·순성토 현황을 숙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의 토석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감리·시공업체도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기관에서 2013. 9. 6. 당시 사장의 결재를 받고 수립한 “☆☆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 신청 계획” 상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계획서의 사토처리계획에 따르면 발생 잔토는 인근개발 계획을 고려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활용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토에 대해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자산으로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14. 6. 18.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토목,건축) 공사”에 착공한 이후부터 2015. 8. 31. 준공할 때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에 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 자산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토(암) 발생량 29,447㎥을 위 공사 현장과 연접한 석산에 제공하는 것으로 임의결정한 후 운반비 125,419천 원을 부담하여 운반처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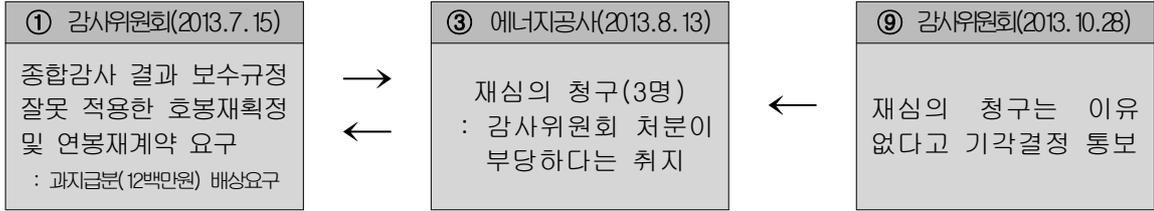
그 결과 공공 건설공사 현장 등에 활용되어야 할 공공자산인 토석을 운반비용 125,419천 원까지 부담하면서까지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공되어 공공자산과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29조에 따라 기관경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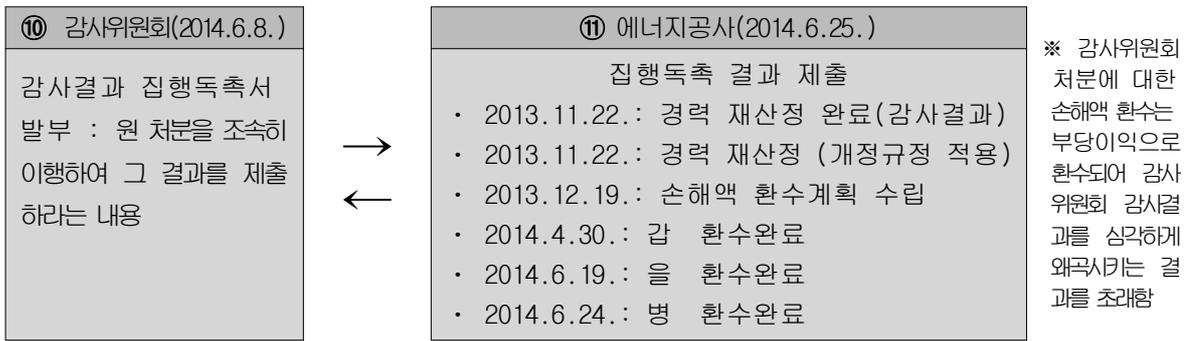
[별표]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에 따른 「보수규정」 개정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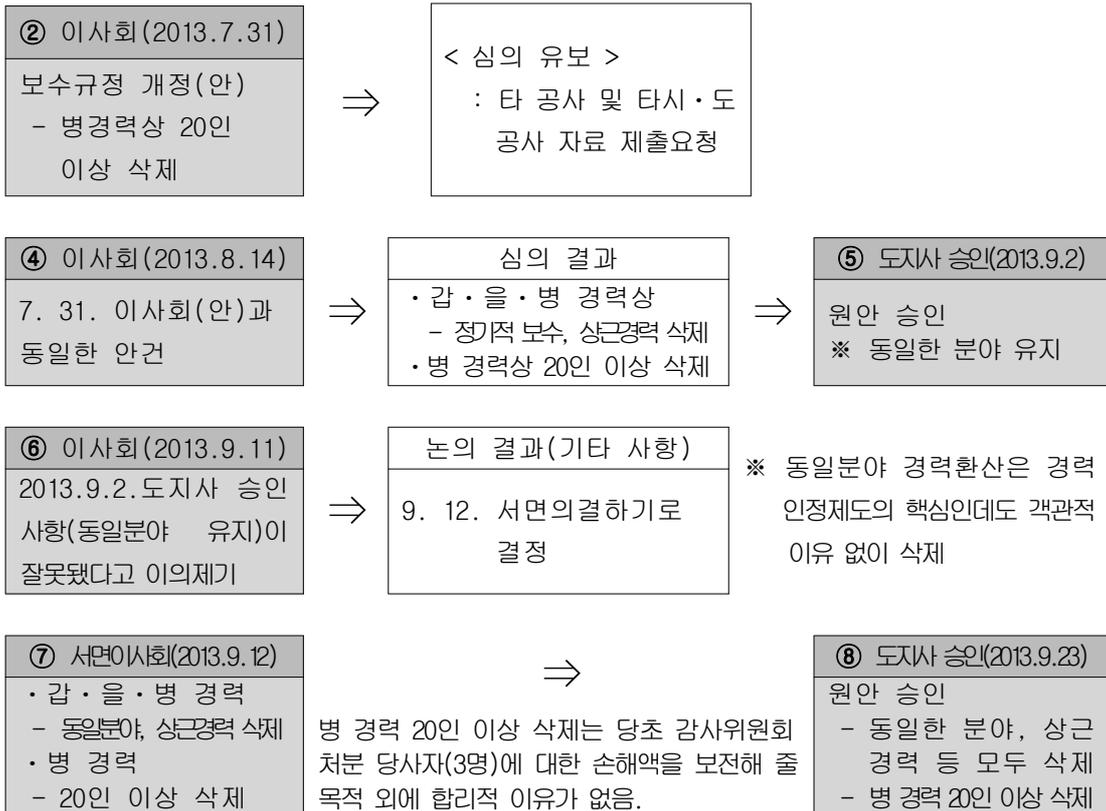
가. 감사위원회 처분요구 및 조치 집행 경과



※ 아래 보수규정 개정 경과와 같이 재심의 신청 전에 규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재심의 기각 결정통보 전에 보수규정 개정 처리함 : 병경력상 20인 이상, 동일분야가 삭제되어 종전보다도 보수 인상 효과가 생김.



나. 보수규정 개정 경과



【일련번호: 2】

# 감 사 위 원 회

## 징 계 요 구

제 목 ☆☆·★★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석관리 등 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제주에너지공사

징계 대상자 제주에너지공사 ◀◀◀◀◀기술센터  
을 (전 제주에너지공사 ♡♡♡♡부장)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2. 7. 5.부터 2016년 1월까지 위 기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업무를 직접 총괄하였다.

### 1. ☆☆·★★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업무 부당 처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4. 6. 18. 제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토목·건축) 공사”를 6,555,318천 원에 계약하여 2015. 8. 31. 준공처리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5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실시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 이상의 사토·순성토 현황을 숙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의 토석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감리·시공업체도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기관에서 2013. 9. 6. 당시 사장의 결재를 받고 수립한 ☆☆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 신청 계획에 있는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계획서 상의 사토처리계획”에 따르면 발생 잔토는 인근개발 계획을 고려하여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공사 추진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에 대하여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위 사토가 공공자산으로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4. 6. 18.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토목,건축) 공사”에 착공한 이후부터 2015. 8. 31. 준공할 때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자산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토(암) 발생량 29,447㎥을 위 공사 현장과 연접한 석산에 제공하는 것으로 임의결정한 후 위 기관에서 운반비 125,419천 원까지 부담하면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공공 건설공사 현장 등에 공공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할 토석을 운반비용 125,419천 원까지 부담하면서 토석 채취업자에게 제공되는 등 공공자산과 예산이

낭비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관계규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사토처리 등록은 발주청 업무이지만 사토처리 관리는 감리단과 시공사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 수립한 공유재산 대부신청 계획서(2013.9.6., 제주에너지공사-3019) 상의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 계획에도 발생 토사량을 52,500㎥(발전기 부지 37,500㎥, 운영 및 관리도로 15,000㎥)으로 예상하면서 인근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육지부와 떨어진 제주지역 실정상 사토(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던 시기임을 고려할 때 29,447㎥ 규모의 사토를 위 발전단지와 연접한 채석장으로 운반비용 125,419천 원까지 부담하면서 운반 처리한 것은 공공자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 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 부적정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제주지역의 향후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읍장에게 사무위임)로부터 ☆☆★☆☆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토지면적: 1,069,680㎥)을 대부받았고, ♠♠리새마을회와 위 새마을회 소유 부지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다만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sup>4)</sup>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사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유재산인 토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부하직원으로서 하여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절차를 정한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을 건축하는 등 준공 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사업을 주관하는 지위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부분은 공유지에 대하여 풍력발전단지 부속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읍장으로부터 대부분은 공유지 토지 및 ♠♠리 새마을회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변전소 및 풍력제어실 등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2014. 10. 28.과 2015. 3. 12. 각각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5. 8. 31. 준공하여 변전소 및 풍력제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준공된 풍력제어실 등 632.69㎡(191평)를 ▼▼읍장으로부터 대부분은 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는 금지하도록 한 대부분조건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로 건축물

---

4) 제주시장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편 위 기관의 업무용재산(용도: ◀◀◀◀◀기술센터)으로 등기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31. ♠♠리새마을회와 사용 협약한 토지도 진입로 부지에 대한 지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전소 1,944.3㎡(580평) 건축을 완료하고서도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건축물을 사용하는 등 사업추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계약서에 상세한 시설물의 명칭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자진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관련 인·허가 처리, 철거비 예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풍력발전기 15기와 관리동 철거비가 예치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정당하게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고 위 기관에서 ▼▼읍과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계약서와 ▼▼읍에서 위 기관으로 통지한 대부 조건 문서에도 영구시설물은 일체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더욱이 위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풍력자원의 공공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다 위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규정된 공유재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그 이행절차를 명문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도 사전에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라 할 수 없고, 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 대부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을 축조하기 이전에 검

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각각 위 기관 「취업규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위 기관 「인사규정」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위 사람을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 감 사 위 원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토석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4. 6. 18. 제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토목·건축) 공사” 를 6,555,318 천 원에 계약하여 2015. 8. 31. 준공처리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5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실시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 이상의 사토·순성토 현황을 숙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의 토석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감리·시공업체도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기관에서 2013. 9. 6. 당시 사장의 결재를 받고 수립한 “☆☆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 신청 계획” 상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계획서의 사토처리계획”에 따르면 발생 잔토는 인근개발 계획을 고려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활용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토에 대해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자산으로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14. 6. 18.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토목,건축) 공사”에 착공한 이후부터 2015. 8. 31. 준공할 때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에 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자산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토(암) 발생량 29,447 m<sup>3</sup>을 위 공사 현장과 연접한 석산에 제공하는 것으로 임의결정한 후 운반비 125,419 천 원을 부담하여 운반처리 하였다.

그 결과 공공 건설공사 현장 등에 활용되어야 할 공공자산인 토석을 운반비용 125,419천 원까지 부담하면서까지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공되어 공공자산과 예산을 낭비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토처리 등재는 발주청 역할이지만 사토처리 관리는 감리단과 시공사의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 수립한 공유재산 대부신청 계획(2013.9.6., 제주에너지공사-3019)에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 계획서에도 사토처리계획으로 발생 토사량 52,500m<sup>3</sup>(발전기 부지 37,500m<sup>3</sup>, 운영 및 관리도로 15,000m<sup>3</sup>)을 예상하고 있고, 발생 잔토는 인근개

발계획을 고려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29,447m<sup>3</sup> 규모의 막대한 량의 사토를 발전단지와 연접한 채석장에 운반비용 125,419천 원까지 부담하면서 운반한 것은 공공자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육지부와 떨어진 제주지역 실정상 사토(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처리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토석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토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토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 감 사 위 원 회

## 주의요구·통보

제 목 ☆☆★★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향후 제주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읍장에게 사무위임)로부터 ☆☆★★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면적: 1,069,680㎡)를 대부 받았고, ♠♠리새마을회와 위 새마을회 소유의 부지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읍장으로부터 대부받은 토지 및 ♠♠리 새마을회와 사용협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변전소 및 풍력 제어실 등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2014. 10. 28.과 2015. 3. 12. 각각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2015. 8. 31.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변전소 및 풍력제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다만,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공유재산인 풍력발전단지 부지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절차를 정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읍장으로부터 대부받은 공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영구 시설물 축조를 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하여 영구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읍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대부조건인 영구시설물 설치 등은 일체 금지하도록 한 조건을 위배하게 되어 풍력관리실 등 632.69㎡(191평)에 대하여 위 기관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업무용재산(용도: ◀◀◀◀◀기술센터)으로 등기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5. 8. 31. ♠♠리새마을회와 사용 협약한 토지에 변전소 1,944.3㎡(580평) 건축을 완료하고서도 진입로 부지에 대한 지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관계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였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배하여 영구시설물이 설치되고, 「건축법」 규정을 위배하여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계약서에 상세한 시설물의 명칭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자진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처리, 철거비 예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풍력발전기 15기와 관리동 철거비가 예치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정당하게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고 위 기관에서 ▼▼읍과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계약서와 ▼▼읍에서 위 기관으로 통지한 대부 조건 문서에도 영구시설물은 일체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더욱이 위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풍력자원의 공공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다 위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규정된 공유재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그 이행절차를 명문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도 사전에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할 수 없고, 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 대부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을 축조하기 이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하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적극적인 진입로 지적 분할 협의 등을 통해 풍력제어실 및 변전소 등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통보)

② 앞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유재산 대부 및 건축물 사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

# 감 사 위 원 회

## 징 계 요 구

제 목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관리 등 업무 부당 처리

관 계 기 관 제주에너지공사

징계 대상자 제주에너지공사 ♥♥♥♥부  
병 (전 제주에너지공사 드드드드팀)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2. 8. 24.부터 2016년 7월 현재까지 위 기관 ♥♥♥♥♥부에 대리료 채용된 후 같은 부서 UUUU팀장(직무대리) 직위에서 위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 발전소 시설물 관리, 물품관리, 보안관리, 광고선전비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1.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 발전소 시설물 관리업무 태만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과 위 홍보관과 연계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 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위 기관에서는 2012. 7. 4.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현물 출자를 받아 4D영상관, 에너지스테이션, 제주의 사계, 에너지독립국을 꿈꾸며 등의 주요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 기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책임자는 홍보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시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홍보관 관리를 주관하는 자로서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홍보관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주요 시설물 중 하나인 에너지스테이션의 경우 2015년부터 고장났고, 전자방명록, 제주의 사계, 에너지 독립국을 꿈꾸며 등이 2015년 또는 2016년 1~2월경에 고장나 있는 등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전부터 고장이나 있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 대한 주요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이용객이 [표 2]와 같이 년도 대비 2015년 이용객수가 2014년 대비 5,433명(15%)이 감소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 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설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2]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이용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개별	단체	합계	개별	단체	합계	개별	단체	합계
이용자수	9,531	25,545	35,076	20,580	15,400	35,980	19,378	11,169	30,547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나. 태양광 발전소

위 기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부지 내에 태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을 모듈을 통해 직접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 3]과 같이 태양광발전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 제주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전략(태양광 발전사업 분야)

목표연도	단기(~ 2015년)	중기(~ 2020년)	장기(~ 2030년)
목표설비용량 (이용율)	1MW(10%)	2MW(12%)	35MW(15%)
태양광 발전사업	- ◎◎ 태양광발전단지 운영 - 주택용 태양광설비 지원	- 에관공 및 민간사업자와 태양광사업 공동 추진 - ☆☆☆☆☆ 풍력단지 유희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도내 풍력단지 유희 부지대상으로 사업 확장 -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 추진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2015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발췌

「제주에너지공사 재산관리 규정」 제1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는 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재산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관리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부지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위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 유지 점검하여 발전량 및 이용율(%)을 제고함으로써 위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화석에너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처가 가

능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장점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기간 중(2016. 4. 15. ~ 2016. 4. 22.)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태양광 발전의 주요 구성소자인 태양광 모듈 10개가 탈락되는 등(9개 탈락, 1개 뒤틀림<sup>5)</sup>)으로 연간 발전량 및 이용율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고, 위 태양광 발전소 입구 앞쪽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모듈도 탈락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그 결과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

#### 다. 구 홍보관(풍력발전단지 모니터링실)

위 기관에서는 2012. 7. 4. 설립 이후 같은 해 7. 23.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시 ▼▼읍 소재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구 홍보관<sup>6)</sup>(2010. 5. 19.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건립되어 개관하기 이전에 사용한 건물)을 현물 출자 받아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

5) 위 건과 관련하여 뒤틀림 된 내역을 지적하자 감사기간인 2016. 4. 24일 새로운 모듈로 교체 하였음

6) 구 홍보관(모니터링하우스)

- 건축면적: 395.45㎡(120평), 지하1층 39.08, 1층 191.97, 2층 164.40

- 1층 근린생활시설

· 현재 사용면적: 1층 모니터링실(41.4㎡) 중 바닥면적(약 2평)을 점유한 ◀◀◀◀기술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기기가 설치되어 있음

· 2층(모니터링하우스 2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와 현물 출자 협약(협약기간: 2009. 3. 1.~ 2014. 2. 28)이 체결되어 ◆◆◆◆◆ 풍력특성화 대학원에서 2009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인 2014. 2. 28.까지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비어 있음

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에너지공사 재산관리 규정」 제8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재산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관리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2010. 5. 19.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개관되면서 빈 공간으로 남게 된 구 홍보관(풍력발전단지내 모니터링실) 건물에 대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산 관리자로서의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2. 7. 23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위 구 홍보관에 대하여 2016. 4. 26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실로만 활용하면서 모니터링 측정기기 1대만 설치(면적: 약 7㎡)되어 있을 뿐 나머지 면적(388㎡)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그 결과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구 홍보관 건물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구 홍보관(풍력발전단지 모니터링실) 건물 활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후 2층의 사용권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에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협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고, 홍보 전시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1층의 경우 정비 후 초기에는 예비부품 창고 및 유지·보수 시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공간은 ◀◀◀◀◀

기술센터에서 모니터링 측정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 간 현물출자  
확약서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2009.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협약기간 만료일  
부터는 구 홍보관 2층 공간 활용이 가능한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모니터링  
측정기기가 설치된 바닥면적도 약 7㎡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재물조사 미 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리 풍력발전기 등 약 1,121억여 원의 고정자산 및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4에 따르면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물품관리 내부 지침」에 따르면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물론 물품  
관리를 위한 장부비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  
하는 재물조사 작업을 년 1회 실시하며, 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  
보고를 종합심사 정리하여 재물조사서 및 초과·부족·불용품 목록표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3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소관 물품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물품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물품관리에 대한 기준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물품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물품관리 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처분요구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자체 물품관리 내규 및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소관 물품 관리를 위하여 대장비치, 재물조사 실시 및 고가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대장 비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물품관리를 주관하는 자로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물품관리 내규 등은 마련하였으나 물품관리대장 정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7월 설립이후 재물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 감사위원회의 부채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지적되어 2015년 12월 고가의 고정자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규정」을 제정만 한 채 위 규정에 따른 재산관리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기관의 ♥♥♥♥부에서 구입한 사무용 비품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표]와 같이 파티션, 캐비닛, 천공인증기 등의 물품이 망실되었는데도 위 기관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풍력발전단지 내 재고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예비품 및 유탄유 등의 재고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보관되어 있거나 수량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부 물품 실제조사 결과 차이 내역

(단위: 원)

연번	연월일	품명	규격	단위	단가	구입수량	실제수량
1	2012-08-20	파티션	파티션(700*60*1096)	개	122,182	52	45
2	2014-09-18	파티션	파티션(700*60*1096)	개	121,818	17	
3	2012-09-22	파티션	파티션(750*60*1096)	개	118,909	1	-
4	2012-08-20	캐비닛	캐비닛(802*425*1160)	개	160,636	15	15
5	2014-01-29	캐비닛	캐비닛(802*425*1160)	개	161,542	2	
6	2012-08-01	프린터	A 406 DN	대	332,727	5	3
		문서세단기	SC-7120D	대	390,000	2	-
7	2014-06-09	자동인증기	제본천공기, 가평테크, KP-2580S, 천공인증기	대	563,320	1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었는지, 고가의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이나 보관

장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물품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3. 보안업무 규정 제정업무 태만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6년 4월 현재 정관 1종, 조례 1종, 규정 20종, 규칙 4종, 지침 13종 등 총 39종의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보안측정의 대상으로 전기 발전 및 변전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발전 및 변전 시설 등 주요시설을 보유,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안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보안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자로서 2016. 4. 26.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 개인별 사무분장 상에 보안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자체 보안업무규정도 제정하지 아니하는 등 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채 내버려두고 있다.

그 결과 국가 보안시설이 위해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인원보안의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설 및 정보통신 보안은 보안업체 용역을 통해 전산망 정보보호시스템

및 사무실, 홍보관, 발전시설 등에 보안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운영관리 1, 2팀에서 상시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원보안은 신원조사 뿐만 아니라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공무국외여행 절차,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에 대한 보안조치를 포함하고 있고, 시설보안은 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요령 등을, 문서보안은 공문서에 대한 비밀의 구분 및 분류, 생산, 발송, 접수, 보관관리, 파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안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 송신·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조·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 또는 기술적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광고선전비 집행업무 부당 처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광고선전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광고선전비는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에 한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광고선전비를 집행할 때에는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기관 홍보를 위하여 효과적인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4년도 광고선전비를 집행하면서 ◇◇수산 또는 ◆◆축산 등에서 수산물 등 1차 산품을 19회에 걸쳐 계 10,690천 원을 구입하는 등

업무추진비로 구입해야 할 선물을 광고선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 결과 광고선전비가 광고료가 아닌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각각 위 기관 「취업규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위 기관 「인사규정」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위 사람을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1】

# 감 사 위 원 회

## 시정요구·통보

제 목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sup>7)</sup>과 위 홍보관과 연계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 1. 시설물 관리 소홀

#### 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2012. 7. 4.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현물 출자를 받아 [표 1]과 같이 4D영상관, 에너지스테이션, 제주의 사계, 에너지독립국을 꿈꾸며 등의 주요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 7)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 해안로 712-3
- 사업비: 70억 원(국비 36억원, 지방비 24억원, 기금 10억원)
- 건설기간: 2008년 1월 ~ 2010년 5월
- 개 관: 2010. 5. 19.
- 규모: 1,719㎡(연면적 2,467㎡, 지상 2층)/ 대지면적 25,306㎡
- 주요시설: 신재생에너지 전시·홍보시설, 체험교육공간, 4D영상관, 야외광장 등
- 주요기능: 체험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를 통한 이해도 및 사회수용성 증진
- 2012. 7. 4.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현물출자로 소유 및 운영권을 넘겨받음

[표 1]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주요 시설물 설치 운영 현황

주요 시설물	시설물 내용 및 사용방법
4D영상관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특공대(4D, 애니메이션, 15분) - 캐릭터친구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마법사를 만나러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상영
에너지스테이션	바코드 인식 시스템에 바코드를 가져다 되면 바코드를 인식하여 모니터 위에 있는 카메라가 작동하여 사진 촬영을 하는 시스템
제주의사계	제주의 사계'는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반응을 보이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스크린에 1분 간격으로 제주도의 사계를 볼 수 있음
에너지독립국을 꿈꾸며	그림자센서를 활용하여 원형에 나타난 카드를 클릭 시 그 해당 카드가 벽면 화면으로 전송되어 카드에 있던 캐릭터가 벽면 화면으로 나타남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위 기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책임자는 홍보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시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홍보관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주요 시설물 중 하나인 에너지스테이션의 경우 2015년부터 고장났고, 전자방명록, 제주의 사계, 에너지 독립국을 꿈꾸며 등이 2015년 또는 2016년 1~2월경에 고장나는 등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전부터 고장이나 있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 대한 주요 시설물 관리가 소홀히 되어 이용객이 [표 2]와 같이 년도 대비 2015년 이용객수가 2014년 대비 5,433명(15%)이 감소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

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설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2]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이용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개 별	단 체	합 계	개 별	단 체	합 계	개 별	단 체	합 계
이용자수	9,531	25,545	35,076	20,580	15,400	35,980	19,378	11,169	30,547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부지 내에 태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을 모듈을 통해 직접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 3]과 같이 태양광발전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 제주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전략(태양광 발전사업 분야)

목표연도	단기(~ 2015년)	중기(~ 2020년)	장기(~ 2030년)
목표설비용량 (이용율)	1MW(10%)	2MW(12%)	35MW(15%)
태양광 발전사업	- ◎◎ 태양광발전단지 운영 - 주택용 태양광설비 지원	- 에관공 및 민간사업자와 태양광사업 공동 추진 - ☆☆★★풍력단지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도내 풍력단지 유휴 부지대상으로 사업 확장 -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 추진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2015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발췌

「제주에너지공사 재산관리 규정」 제1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는 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재산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관리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부지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위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 유지 점검하여 발전량 및 이용율(%)을 제고함으로써 위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화석에너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처가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장점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2016. 4. 15. ~ 2016. 4. 22.)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태양광 발전의 주요 구성소자인 태양광 모듈 10개가 탈락되는 등(9개 탈락, 1개 뒤틀림<sup>8)</sup>)으로 연간 발전량 및 이용율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고, 위 태양광 발전소 입구 앞쪽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모듈도 탈락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그 결과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

#### 다. 구 홍보관(풍력발전단지 모니터링실)의 경우

위 기관에서는 2012. 7. 4. 설립 이후 같은 해 7. 23.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시 ▼▼읍 소재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구 홍보관(2010. 5. 19.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건립되어 개관하기 이전에 사용한 건물)을 현물 출자 받아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

8) 위 건과 관련하여 뒤틀림 된 내역을 지적하자 감사기간인 2016. 4. 24일 새로운 모듈로 교체 하였음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에너지공사 재산관리 규정」 제8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관리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2010. 5. 19.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개관되면서 빈 공간으로 남게 된 구 홍보관(풍력발전단지내 모니터링실) 건물에 대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산 관리자로서의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2. 7. 23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구 홍보관에 대하여 2016. 4. 26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실로만 활용하면서 모니터링 측정기기 1대만 설치(면적: 약 7㎡)되어 있을 뿐 나머지 면적(388㎡)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그 결과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구 홍보관 건물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구 홍보관(풍력발전단지 모니터링실) 건물 활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후 2층의 사용권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에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협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고, 홍보 전시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1층의 경우 정비 후 초기에는 예비부품 창고 및 유지·보수 시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공간은 ◀◀◀◀◀기술센터에서 모니터링 측정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간 현물출자

확약서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2009.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협약기간 만료 일 부터는 구 홍보관 2층 공간 활용이 가능한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모니터링 측정기기가 설치된 바닥면적도 약 7㎡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태양광 발전소 이용율 및 발전량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 소홀

위 기관에서는 2010년 2월 준공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다가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2013년 11월까지는 자가 소비를 위한 전기설비로 운영하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발전 사업용으로 변경하여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위 기관 「정관」 제1조 및 6조에 따르면 위 기관은 「지방공기업법」과 「제주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활성화와 재정건전화 및 공공복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발전 사업용으로 변경하여 상업운전을 할 때에는 발전량 및 이용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와 재정 건전화 및 경제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1] “○○ 태양광 발전단지 발전량 및 이용율” 과 같이 이용율인 경우 2014년에 제주

지역 평균은 13.2%인데 비해 7.2%, 2015년에도 제주지역 평균은 14%인데 비해 9.2%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제주지역 평균 이용율 14%를 기준으로 발전량 및 발전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별표 2]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발전량 및 발전대금 산정 내역” 과 같이 발전량은 2015년의 경우 제주지역 평균 620,558Kwh의 66% 수준인 408,805kwh, 발전대금도 제주지역 평균 7천7백만 원의 75% 수준인 5천8백여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고 있다.

더욱이 위 기관에서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발전량 및 이용율에 대하여 일별 및 월별 단위로 계량화하여 수치를 기록 관리하여 변동폭 등을 정밀히 분석하고 데이터화 하여 발전설비에 대한 피드백 등을 위한 연구자료 및 태양광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상업운전을 시작하기 전 기간(2012년 7월 ~ 2013년 11월) 동안의 자료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및 이용율, 발전대금 등 운영 실적이 제주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여 수입이 감소되고, 원인 분석에 오랜 시간이 소요 되는 등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타 태양광 발전소에 비해 발전량이 떨어지는 이유로 풍속이 강한 ◎◎에 위치하여 해안가 염해에 의한 지지대 부식과 강풍에 의한 모듈 및 구조물 탈락, 홍보관 관람객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태양을 따라 추적하는 단축식·양축식 태양광 발전설비의 고정으로 인한 수광각도에 따른 효율 저하, 타 단지에 설치된 최신의 태양광 시스템인 반면 2010년 도입 당시 제품 간 효율성 차이, 지지대의 주요 구성원인 C형강과 태양광 모듈이 부식 및 고장이

장기간 지속되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나 공사비가 해당 접속반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발전대금보다 매우 높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관이 제주지역의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활성화와 재정건전화 및 공공복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취지를 감안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제주지역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 공사비용을 이유로 공공복리를 무시하여 무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며, 방문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 ① 구 홍보관(풍력발전단지 모니터링실)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및 태양광 발전소 이용을 저하에 따른 원인 분석 등 이용을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통보**)
- ②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의 주요 시설물과 탈락된 태양광 모듈에 대하여는 조속히 수리를 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시정**),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 발전소 운영관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태양광 발전단지 발전량 및 이용율

구분	2014년												합계	평균	제주지역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MP가격 (원)	201.22	202.83	207.40	209.18	198.14	193.63	194.02	192.03	188.65	194.75	191.05	170.12	-	195.25	195.25
발전량 (kWh)	26,076	19,672	33,627	33,752	35,587	15,348	27,409	25,936	25,123	29,172	26,407	19,232	317,341	26,445	-
발전대금 (원)	5,088,844	3,883,734	6,794,729	6,927,778	7,131,666	3,066,187	5,456,173	5,150,483	4,808,142	5,762,160	4,956,729	3,235,227	62,261,852	5,188,488	-
이용율 (%)	6.9	5.8	8.9	9.3	9.5	4.2	7.3	6.9	6.9	7.7	8.3	5.1	-	7.2	13.2

구분	2015년												합계	평균	제주지역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MP가격 (원)	160.99	137.11	117.83	132.25	130.94	131.81	133.33	129.35	118.51	103.95	99.30	100.89	-	124.69	124.69
발전량 (kWh)	24,400	24,096	35,999	34,819	51,912	34,332	44,088	44,209	42,167	43,896	14,110	14,777	408,805	34,607	-
발전대금 (원)	4,222,753	3,590,612	4,639,304	4,924,603	7,286,837	4,998,376	6,568,066	6,694,040	5,438,771	4,994,872	1,520,266	3,410,789	58,289,289	4,857,441	-
이용율 (%)	6.5	7.1	9.6	9.6	13.8	9.4	11.7	11.7	11.6	11.7	3.9	3.9	-	9.2	14.0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내부자료 및 한국전력거래소 자료(※ 제주지역 평균 중 발전량 및 발전대금 평균 수치는 산정자료 미확보로 미 표기)

[별표 2]

이용율 14%적용 시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발전량 및 발전대금 산정 내역

구분	SMP가격(원) 및 발전량(kwh)				발전대금(원)	
	2014년		2015		2014	2015
	SMP가격	발전량	SMP가격	발전량		
1월	201.02	52,705	160.99	52,705	10,605,300	8,484,972
2월	202.83	49,305	137.11	47,604	10,000,460	6,527,050
3월	207.4	52,705	117.83	52,705	10,931,009	6,210,225
4월	209.18	51,005	132.25	51,005	10,669,184	6,745,385
5월	198.14	52,705	130.94	52,705	10,442,961	6,901,187
6월	193.63	51,005	131.81	51,005	9,876,059	6,722,943
7월	194.02	52,705	133.33	52,705	10,225,816	7,027,152
8월	192.03	52,705	129.35	52,705	10,120,933	6,817,387
9월	188.65	51,005	118.51	51,005	9,622,056	6,044,579
10월	194.75	52,705	103.95	52,705	10,264,291	5,478,681
11월	191.05	51,005	99.3	51,005	9,744,467	5,064,777
12월	170.12	52,705	100.89	52,705	8,966,168	5,317,403
합계 (평균)	(195.2 5)	<b>622,259</b>	(124.6 9)	<b>620,558</b>	<b>121,468,704</b>	<b>77,341,741</b>

【일련번호: 3-2】

#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리 풍력발전기 등 약 1,121억여 원의 고정자산 및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4에 따르면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물품관리 내부 지침」에 따르면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물론 물품 관리를 위한 장부비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 하는 재물조사 작업을 년 1회 실시하며, 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 보고를 종합심사 정리하고 재물조사서 및 초과·부족·불용품 목록표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3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소관 물품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물품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물품관리에 대한 기준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물품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물품관리 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처분요구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자체 물품관리 내규 및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소관 물품 관리를 위하여 대장비치, 재물조사 실시 및 고가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대장 비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물품관리 내규 등은 마련하였으나 물품관리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7월 설립이후 재물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 감사위원회의 부채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지적되어 2015년 12월 고가의 고정자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규정」을 제정만 한 채 위 규정에 따른 재산관리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기관의 ♥♥♥♥부에서 구입한 사무용 비품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표]와 같이 파티션, 캐비닛, 천공인증기 등의 물품이 망실되었는데도 위 기관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풍력발전단지 내 재고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예비품 및 유탄유 등의 재고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보관되어 있거나 수량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부 물품 실제조사 결과 차이 내역

(단위: 원)

연번	연월일	품명	규격	단위	단가	구입수량	실제수량
1	2012-08-20	파티션	파티션(700*60*1096)	개	122,182	52	45
2	2014-09-18	파티션	파티션(700*60*1096)	개	121,818	17	
3	2012-09-22	파티션	파티션(750*60*1096)	개	118,909	1	-
4	2012-08-20	캐비닛	캐비닛(802*425*1160)	개	160,636	15	15
5	2014-01-29	캐비닛	캐비닛(802*425*1160)	개	161,542	2	
6	2012-08-01	프린터	A 406 DN	대	332,727	5	3
		문서세단기	SC-7120D	대	390,000	2	-
7	2014-06-09	자동인증기	제본천공기, 가평테크, KP-2580S, 천공인증기	대	563,320	1	-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었는지, 고가의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이나 보관 장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물품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소관 물품 및 재고 자산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시정),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물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업무처리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3-3】

# 감 사 위 원 회

## 주의요구·통보

제 목 보안업무 규정 제정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6년 4월 현재 정관 1종, 조례 1종, 규정 20종, 규칙 4종, 지침 13종 등 총 39종의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보안측정의 대상으로 전기 시설에 발전 및 변전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발전 및 변전 시설 등 주요시설을 보유,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안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 4. 26.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 개인별 사무분장 상에 보안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자체 보안업무규정도 제정하지 아니하는 등 보

안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보안시설이 위해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인원보안의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설 및 정보통신 보안은 보안업체 용역을 통해 전산망 정보보호 시스템 및 사무실, 홍보관, 발전시설 등에 보안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여 운영관리 1, 2팀에서 상시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원보안은 신원조사 뿐만 아니라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공무국외여행 절차,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에 대한 보안조치를 포함하고 있고, 시설보안은 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요령 등을, 문서보안은 공문서에 대한 비밀의 구분 및 분류, 생산, 발송, 접수, 보관관리, 파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안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 송신·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조·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 또는 기술적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① 보안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적인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자체 규정 제·개정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4】

# 감사위원회

## 주 의 요 구

제 목 광고선전비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에너지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광고선전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출예산과목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광고선전비는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에 한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광고선전비를 집행할 때에는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기관 홍보를 위하여 효과적인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4년도 광고선전비를 집행하면서 ◇◇수산물 또는 ◆◆축산 등에서 수산물 등 1차 산품을 19회에 걸쳐 계 10,690천 원을 구입하는 등 업무추진비로 구입해야 할 선물을 광고선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 결과 광고선전비가 광고료가 아닌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 광고선전비를 집행하면서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 감사위원회

## 주의요구·통보

제 목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직원 연봉계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3. 7. 31.부터 같은 해 9. 12.사이에 [표 1]과 같이 「보수규정」제5조2 및 “경력환산표”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하였다.

[표 1] 「보수규정」 [별표 7] “경력환산표” 개정 내용

번호	사규심의위원회	이사회		도지사 승인	개정 전	개정 후
		일자	결과			
1	-	2013.7.31. (제21차)	심의 유보	-	(병 경력) ○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종사원 20인 이상 ~ 50인 미만) - 채용부문 직무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 이사회 심의유보 (타 시도 및 타 공사 규정 제출요청)
2	2013.8.2.	2013.8.14. (제22차)	수정 의결	2013.9.2.	(갑, 을, 병 경력 공통) ○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종사원 50인 미만) - <u>채용부문 직무분야와 동일한 분야에</u> <u>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u> <u>지급받고 상근한 경력</u>	(갑, 을, 병 경력 공통) ○ 일반기업에서 <u>동일한 분야(신설)</u> 근무한 경력(종사원 50인 미만) - <u>단서조항 삭제</u>
3	-	2013.9.11. (제23차).		-		○ 제22차 이사회 의결내용과 다르게 도지사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u>서면의결</u> 하기로 결정

번호	사규심의 위원회	이사회		도지사 승인	개정 전	개정 후
		일자	결과			
4	-	2013.9.12. (제24차)	원안 의결	2013.9.23.	(갑, 을, 병 경력 공통) ○ 일반기업에서 <b>동일한 분야</b> 근무한 경력(종사원 50인 미만)	(갑, 을, 병 경력 공통) ○ 서면의결 ○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종사원 50인 미만) - <b>'동일한 분야' 삭제</b>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1. 보수규정 개정 불합리

위 기관에서는 2013년 7월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경력직으로 채용된 위 기관 소속 3명에 대해 경력환산표를 잘못 적용하여 호봉 및 연봉을 과다 산정하였으므로 경력환산표 적용률(20인 미만 기업, 불인정)에 맞게 재산정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위 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불복하여 2013년 8월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0월 위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보수규정」의 경력환산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 경력환산표가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종전의 유사경력이 불합리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위 기관에서는 2012년 에너지 공기업으로 출범할 당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환산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 경력환산표는 재직 후에 불가피하게 경력환산을 다시 해야만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하여야 하고, 규정개정 시에는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명확히 정하여 적정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13. 7. 15. 감사위원회로부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 받자마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검토나 경력인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재 직무와 예전 직무의 유사성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타 기관과의 객관적인 비교 등 경력환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관 사규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날짜 모름) “병 경력 20인 이상” 을 삭제하는 등 불리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 보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4회에 걸쳐 이사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회에 걸쳐 도지사 승인을 받아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위 개정된 「보수규정」을 개정규정 시행일(2013. 9. 23.)부터 신규 채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 총 7명에게도 신규채용자로 소급 적용하여 경력을 재산정 하였다.

그 결과 경력인정제도의 취지와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가 무의미 해지는 「보수 규정」이 개정·시행되었고, 직원 총 7명에게 금전적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2013년 7월 감사위원회로부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당시 사장이 「보수규정」의 경력환산표 내용 중 “병 경력 관련 20인 이상” 에 대하여 검토를 지시하자 도내 타 공사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여 병 경력 관련 내용을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종사원 20인 이상 ~ 50인 미만)” 과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종사원 50인 미만)”

으로 “종사원 20인 이상”을 삭제하여 최초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치면서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차원에서 갑·을·병 경력까지 대폭  
적으로 완화하게 되었으며, 직원의 사기진작 및 우수 직원 채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12. 1.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민간경력 등 호봉인정  
기준이 일부변경 되었고 같은 해 5. 17 「201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민간경력 호봉인정 등 호봉 재확정  
추진계획에 따른 경력재산정과 관련하여 위 기관도 민간경력을 이에 맞추어 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sup>9)</sup>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제1항<sup>10)</sup>(국가공무원법 제46조<sup>11)</sup>도  
마찬가지임)에 근거를 둔 평등의 원칙은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각각 취급하여야 한다는 실질  
적인 평등을 뜻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의미  
로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문<sup>12)</sup>에 따르면 호봉제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

9)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1)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12) 판단문 2008. 6. 25. 07진차1194

분석 없이 단지 그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sup>13)</sup>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 이라고 판결하여 경력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 산정 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직무와 예전 직무의 유사성 여부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에 충족되는 규모 등 조직 체계, 업무내용의 숙련도, 업체의 종류와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표 2]와 같이 도내 타 공기업과 위 기관의 경력환산표를 비교하더라도 타 공사는 비록 20인 이상 규정은 없으나 에너지 전문 공기업인 위 기관 업무특성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위 기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타 공사는 정규직, 관련업체 규정이 있어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데도 마치 에너지공사만

---

13) 국가인권위원회는 ■■■■ 관련 지방공사가 ■■■■ 운영기관의 정규직 직영역(100%), 10인 미만의 도급역 종사자는 종업원 20인 미만의 도급업체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호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아 ■■■■ 운영기관 정규직 근무자와 도급역 근무자의 경력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막연하게 인식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타 공사와 단순 비교하여 병 경력의 20인 이상뿐만 아니라 갑·을·병 경력의 일반기업 근무 경력의 동일분야,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까지 모두 삭제한 것은 경력인정제도 취지 자체를 위 기관에서는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경력 호봉인정 등 호봉 재확정 추진계획은 동일분야, 정규직·상근 경력자에게만 호봉을 재확정하고 비동일 분야는 현행대로 호봉을 유지 하는 내용으로 위 기관의 「보수규정」 개정(안)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며, 특히 2012년 7월 설립된 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신설 공기업으로서 기관운영의 내실과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사기진작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규정」 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2] 도내 공기업 3사의 경력환산표

구분	□□□□공사	△△△△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갑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규직 경력</li> <li>국·공립기관 정규직 경력</li> <li>국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정규직 경력</li> <li>교육·연구기관 정규직 경력</li> <li>군경력</li> <li><b>민간기업체(법인) 100인 이상 정규직 경력</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경력</li> <li>군 경력</li> <li>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공공기관 정규직 경력</li> <li><b>관광관련 100인 이상 관련업체 정규직 경력</b></li> <li>해당 직무 박사학위, 세무사, 회계사 등 취득후 근무 경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경력</li> <li>군 경력</li> <li>교육·연구기관 동일분야 근무경력</li> <li>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공공기관 정규직 경력</li> <li><b>일반기업(법인) 100인 이상 근무경력</b></li> <li>해당 직무 박사학위, 세무사, 회계사 등 취득 후 근무경력</li> </ul>
을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민간기업체 50인 이상 정규직 경력</b></li> <li>갑 경력 중 정규직 경력(동일분야 이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 경력 3년 초과 경력</li> <li><b>관광관련 50인 이상 관련 업체 정규직 경력</b></li> <li>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훈련·연구·근무 경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일반기업(법인) 50인 이상 근무경력</b></li> <li>해당 직무와 관련있는 훈련, 연구 및 근무경력</li> </ul>
병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직, 임시직 근무경력</li> <li><b>민간기업체 정규직 경력</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경력</li> <li><b>관광관련 50인 미만 관련업체 정규직 경력</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일반기업(법인) 50인 미만 근무경력</b></li> </ul>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자료 재구성

## 2.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 부적정

위 기관에서는 2013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 기관 「보수규정」(2012년 7월 위 기관 출범 시 제정) 제5조 제1항 제2호(구 조항)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병 경력’ 산정 시 종사원 20인 이상인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20인 미만 일반기업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산정한 사항에 대하여 “연봉계약에 따른 경력 산정 부적정” 으로 지적을 받은 후 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력을 재산정하고 보수가 과다 지급된 총 3명에 대하여는 손해배상(12,902,610 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분요구(통보)를 받았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3. 8. 13.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경력 산정을 잘못된 것은 「보수규정」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에게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하여 변상명령을 하더라도 감액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의 귀책 없이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는데도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처분요구(통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며, 감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0. 28. 위 재심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재심의 결과(기각결정)가 통보되면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변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 호봉 재 산정, 연봉재계약 등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반한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년 8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같은 시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이유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과는 어긋나게 직원들에 대한 경력을 재 산정하는 내용으로 「보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9. 23.까지 4회에 걸쳐 이사회 심의·의결 및 2회에 걸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 「보수규정」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 대한 경력 재 산정을 지연하다가 2013. 10. 28. 감사위원회로부터 재심의 신청결과(기각결정)가 통보되자 같은 해 11. 22. 위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감사결과를 마치 수용하는 것처럼 감사처분 대상자 총 3명에 대한 경력을 재 산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으면서 동시에 [표 4]과 같이 위 감사처분 대상자 3명을 포함한 총 7명에 대하여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경력 재 산정 및 연봉계약 체결을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사장의 결재<sup>14)</sup>를 받아 같은 해 9. 23.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하였다.

[표 3] 2013년 종합감사 결과 및 재심의 결정에 따른 경력 재 산정 내역

구 분	성명	경력 재 산정				비고
		당초 인정기간	연차	재 산정 기간	연차	
△△△△부장(3급)	을	20년 10월	21년	10년 1월	11년	
ㄷㄷㄷㄷ팀원(4급)	갑	5년 7월	6년	3년 10월	4년	
ㄷㄷㄷㄷ팀원(5급)	병	10년 7월	11년	4년 9월	5년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14) 문서등록번호는 보수규정 경력환산표 개정에 따른 경력 재산정 및 연봉계약 체결이 먼저 등록됨

[표 4] 보수규정 경력환산표 개정에 따른 경력 재산정 및 연봉계약 체결 내역

구 분	성명	경력 재 산정 부여연차(13년 부여연차)				비고
		입사 시	감사결과	2013. 9. 2	2013. 9. 23.	
♣♣♣♣부장(3급)	을	21	11(12)	17(18)	22(23)	
◆◆◆◆팀장(4급)	기	14	-	14(15)	15(16)	
ㄷㄷㄷㄷ팀원(4급)	갑	6	4(5)	4(5)	5(6)	
◎◎홍보관T/F팀장(5급)	경	17	-	18(19)	19(20)	
◆◆◆◆팀장(5급)	신	12	-	13(14)	13(14)	
ㄷㄷㄷㄷ팀원(5급)	병	11	5(6)	9(10)	14(15)	
◆◆◆◆팀원(5급)	임	7	-	8(9)	9(10)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는 2014. 6. 3. 위 기관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집행 독촉서를 발부하였고, 이에 위 기관에서는 같은 해 6. 25. 조치결과[경력 재산정 완료(2013. 11. 22.), 손해액 환수 계획 수립(2013. 12. 19.), 과지급금 환수 완료(갑 등 3명)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기관에서 환수내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표 3]과 같이 문서상으로만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이행하는 것처럼 처리하면서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과는 어긋나게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보수규정」은 소급 적용례를 두지 않아 앞으로 신규채용 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데도<sup>15)</sup> [표 4]과 같이 현재 재직 중인 직원까지 적용하여 감사처분 대상자 3명을 포함한 총 7명에 대해 경력 재 산정 및 연봉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3년도에만 감사결과에 따른 정당 연봉보다 위 감사처분 대상자인 을은 10,866천 원을, 병은 9,770천 원을, 갑은 1,337천 원을 각각 더 수령하게 되어 연봉 재계약으로 인한 보수 인상분만으로도 환수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5) 위 기관에서는 [별표 1] “보수규정」 신·구 조문 및 별표 대비 표”의 신설 조문에 따라 경력 재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그 결과 과다지급액이 실제로는 보수 인상분으로 환수되는 등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 사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3. 사규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위 기관에서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규의 적절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규관리규정」(2012. 9. 28. 규정 12호)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사규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사규의 제정 및 개·폐안의 입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사규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정·개폐 이유서 및 제정·개폐에 관한 사규안,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사규와의 대비표와 참고자료로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안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저촉 여부,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사규의 조항이 법령, 조례 및 정관에 저촉되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사규심의위원회에서 「보수규정」의 경력환산표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때에는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취지 등 고용차별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경과조치에 대해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13. 7. 3.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통보되자 「보수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이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의 주요쟁점인 연봉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력 환산표에 “일반기업(법인) 20인 이상 ~ 50인 미만” 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히 □□□□공사와 △△△△공사의 병 경력(50%) 기준이 “일반기업 50인 미만” 으로 되어 있어 타 공사 수준<sup>16)</sup>으로 적용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일반기업(법인) 50인 미만” 으로 변경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7. 31. 제21차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난 후 위 기관에서는 보수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자 2013. 8. 2.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단 한차례의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심의안건 자료에 제21차 이사회에서 심의를 보류하면서 요구한 타 시·도의 경력환산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지 개정이유로 도내 타 공사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력환산표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만 제출하여 관계법령이나 경력인정제도의 취지 및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규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보수규정 개정(안)이 법령 저촉 여부나 타 시·도 공사 규정과의 비교 검토도 없이 그대로 이사회에 상정되어 의결 시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4. 이사회 의사결정 지원체계 미흡

위 기관에서는 「정관」 등에 따라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

16) 병 경력의 경우 □□□□공사는 민간기업체 정규직 경력, △△△△공사는 관광 관련 50인 미만 관련 업체 정규직 경력으로 되어 있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 기관 「정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임직원행동강령」(2012. 10. 24. 규정 제14호)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업무풍토 조성을 위한 강령을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이사와 감사가 각각 독립된 직무 범위에 따라 이사는 안전심의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자로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에 대한 적법한 처리요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 3. 27.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종료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확인서 내용 등에 대한 결과만 보고하였을 뿐 당시 이사회에서 의장이 조치사항에 대해 정리를 하자는 의견을 밝혔는데도 정작 중요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해서는 같은 해 7. 31. 개최된 이사회 전까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후 위 기관에서는 2013. 7. 31. 재2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으로

제출된 직원 신규임용에 따른 경력환산표 개정(안)에 대하여 당시 ♥♥♥♥부장이 개정이유와 도내 타 공사 경력환산표 비교표에 의해 제안 설명을 하자, 의장은 이사들이 안전과 관련된 타 시도 공사 자료를 비교표로 만들어 제출토록 하면서 안전 심의가 유보되었다.

그 후 2013. 8. 14.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제21차 이사회 개최 당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별표 2] “타 시도 공사 경력환산표”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장이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당초 제출한 개정(안) 내용에 없는 갑·을 경력환산표까지 동일한 분야의 경력을 삭제하고 적용례 등 법리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본 조인 제5조<sup>17)</sup>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더욱이 위 기관에서는 제22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과는 다르게 삭제하기로 결정된 동일한 분야의 경력을 그대로 넣어 2013. 9. 2.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과장 전결)을 받게 되자, 같은 해 9. 11. 제23차 이사회에서 당시 사장이 기타 논의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다르게 받았다고 긴급 이사회 개최를 통해 수정 의결을 제안하였고, 이에 일부 이사가 서면의결을 제안하자 같은 해 9. 12. 「보수규정」을 도내 타 공사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사유로 동일한 분야의 경력을 다시 제외한 「보수규정」의 경력환산표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서면의결을 거쳐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과장 전결)을 받아 시행하였다.

---

17) 초임연봉계산에 대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기준표에 의하여 직원경력을 산정하여 초임연봉을 계산한다. 다만, 특수한 지식, 기능 또는 경력이 있는 자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결과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소홀히 이루어져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 사항에 어긋난 보수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는 등 도내 공사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당초 개정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 4.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연봉 재산정 및 재계약 부적정

위 기관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연봉계약은 매년 1월 중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속년수 계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근속년수는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과 공사 재직 기간을 합산한 경력을 말하며, 기본연봉 계산에 있어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신규채용 및 승진,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 10. 28. 감사위원회로부터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쟁점이 되는 병 경력상의 20인 이상을 삭제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은 2013. 9. 23.이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데도 신규채용자로 다시 적용하여 같은 해 11. 22.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 ♣♣부장을 등 총 7명에 대하여 연봉계약을 변경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13년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 사항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지고 연봉계약 변경 체결로 특정인에게 금전적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① 개정된 「보수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경력 재 산정 및 연봉 재계약을 체

결한 소속 직원 7명에 대하여는 '2013년도 감사위원회 감사' 및 '보수규정 경력 환산표 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을 재산정하고 호봉을 재확정하며, 2013년 「보수규정」 개정이후 보수 인상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적정한 손해액 보전방안을 강구하고(통보)

② 앞으로 「보수규정」 등을 부적정하게 개정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관련자에게는 각각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보수규정 개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전 제주에너지공사 파견)에게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보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및 [별표] 대비표

종 전(시행 : 2012. 7. 5)		개 정 안(시행 : 2013. 9. 23)	
본 조			
<신 설>		제5조2(초임연봉계산)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b>경력 기준표(별표 7)</b> 에 의하여 직원 경력을 산정하여 초임 연봉을 계산한다. 다만, 특수한 지식, 기능 또는 경력이 있는 자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7			
갑 경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경력</li> <li>군경력</li> <li>교육·연구기관 동일분야 근무경력</li> <li>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공공기관 정규직 경력</li> <li>일반기업(법인) 100인이상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용부분 <b>직무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b></li> </ul> </li> <li>해당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 세무사, 회계사 등 취득 후 근무경력 또는 교수경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경력</li> <li>군경력</li> <li>교육·연구기관 동일분야 근무경력</li> <li>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공공기관 정규직 경력</li> <li>일반기업(법인) 100인이상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lt;삭 제&gt;</b></li> </ul> </li> <li>해당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 세무사, 회계사 등 취득 후 근무경력 또는 교수경력</li> </ul>	
을 경력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기업(법인) 50인 이상~100인 미만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용부분 <b>직무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b></li> </ul> </li> <li>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훈련, 연구 및 근무경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기업(법인) 50인 이상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lt;삭 제&gt;</b></li> </ul> </li> <li>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훈련, 연구 및 근무경력</li> </ul>	
병 경력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종사원 <b>20인 이상 ~ 50인 미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용부분 <b>직무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b></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기업(법인) <b>50인 미만</b>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인 이상 삭제</li> <li><b>&lt;삭 제&gt;</b></li> </ul> </li> </ul>	
적용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채용자 초임연봉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시행할 수 있다.</li> <li>근무처 1곳에 대하여 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력에 대해서만 반영</li> <li>인턴사원, 아르바이트는 경력인정 제외</li> <li>경력직이 아닌 신규직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군 복부 경력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채용자 초임연봉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시행할 수 있다.</li> <li>근무처 1곳에 대하여 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li> <li>인턴사원, 아르바이트는 경력인정 제외</li> <li>-----</li> <li>제5조2의 초임연봉계산을 위한 기본사항임.</li> </ul>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전국 지방공사·공단 등 병(정)경력 경력환산표(8. 14, 이사회 제출 자료)

기관별	병(정)경력 적용대상	적용율	비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종업원 <b>50인 이상 300인 미만</b> 기업체	60%	
부산도시공사	● 기업체( <b>종사원 30인 이상</b> ) 근무경력	50%	
부산환경공단	● 병 경력( <b>자격증소지, 50인 이상 정규직</b> )	60%	
	● 정 경력( <b>20인 이상, 환경·전기 등 해당분야</b> )	40%	
인천 중구 시설관리공단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b>상근</b> , 기업체 채용직무분야 <b>정규직</b>	50%	
경기평택항만공사	● 기업체(비상장회사 <b>종업원 50인 이상</b> ) 근무경력	50%	
경기도시공사	● 병 경력( <b>50인 이상</b> ) 근무경력, <b>회계·세무감정평가법인</b> 등	50%	
	● 정 경력 : 갑을병 경력 이외의 근무경력	30%	
구리농수산물공사	● 기업체( <b>종사원 30인 이상</b> ) 근무경력	50%	
광주지방공사	● 공사 임용직종과 <b>동일 또는 유사직종 근무경력</b> ● 국가, 지자체가 <b>50% 이상 투자</b> 한 공사공단의 <b>상근직 근무경력</b>	50%	
김대중컨벤션센터	● 병 경력 : <b>정규직 30인이상</b> 기업, <b>전문자격증 소유, 해당분야 근무경력</b>	60%	
	● 공공단체 <b>정규직</b> , 기업체 <b>150인 이상 정규직</b> 근무경력	50%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b>청원경찰(국가 및 지자체)</b>	70%	
	● 상시근로자 <b>100인 이상</b> , 상장회사 <b>정규직(동종분야)</b>	50%	
울산도시공사	● 상시 종업원 <b>300명 이상 정규직</b> 근무경력	80%	
	● 상시 종업원 <b>100명 이상 정규직</b> 근무경력	70%	
	● 상시 종업원 <b>50명 이상 정규직</b> 근무경력	60%	
	● 사기업체 <b>정규직</b> 근무경력	50%	
경상남도개발공사	● 기업체(종업원 <b>30인 이상</b> ) 근무경력	50%	
경상북도개발공사	● 갑을병 경력에 예시된 이외의 경우 근무경력	50%	
전라남도개발공사	● 병: 기업체( <b>100인 이상</b> ), 공공단체, 청원경찰 등	70%	
	● 정: 기업체(종업원 <b>10인 이상</b> ) 근무경력	50%	
전북개발공사	● 기업체( <b>10인 이상</b> ) 근무경력( <b>동일분야</b> )	50%	
충북개발공사	● <b>30인 이상</b> (기관, 단체, 기업체) 근무경력	50%	
강원개발공사	● 교육·연구기관 <b>전산, 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b> 종사경력 ● 정당 근무경력( <b>상시 근무경력</b> ) ● 기업체(종업원 <b>10인 이상</b> ) 근무경력	50%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도내 3개 공사 직급 및 각종 수당 등 비교표

1. 직급별 보직

구분 (설립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현	보직	정	현	보직	정	현	보직	정	현	보직	정	현	보직	정	현	보직	정	현	보직
□□□□공사 (1995.3)	10	4	총괄 1 본부장 1 팀장 2	20	11	본부장 1 실장 1 팀장 5	45	16	팀장 8	75	42	팀장 8	139	94	-	227	160	-	51	4	-
△△△△공사 (2008.6)	-	-	-	2	2	처장 2	4	3	처장 2 단장 1	13	8	처장 1 팀장 7	24	17	팀장 2	35	37	-			
제주에너지공사 (2012.7)				1	1	센터장 1	2	-	-	7	3	부장 1 팀장 2	15	14	팀장 4	11	11	-			

2. 각종 수당

기관/구분	비상임임원 활동비	직책수행비	자격수당(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법정필수요원 수당	특수업무 수당	법정관리수당	직무수당
□□□□공사	월: 100만 원 근거: 규정위임 (내부규칙)	사장 140만 원 상임이사 80만 원 총괄 60만 원 본부(실)장 45만 원 팀장 35만 원 담당 10만 원 근거:보수규정	산업기사 월3만 원 기사 월 5만 원 근거: 보수규정	월 8만 원 예산, 결산, 감사, 보수 등(행자부기준) 근거:보수규정	월 5만 원 - 시설안전관리자 근거:규정위임 (내부규칙)	월 3만 원 - 위험노출자 근거:규정위임 (내부규칙)	-	<생산조장수당> 월 5만원  근거:규정위임 (내부규칙)
△△△△공사	월: 80만 원 근거: 규정위임 (내부규칙)	사장 65만 원 상임이사 65만 원 처/단장 45만 원 팀장 30만 원 근거:보수규정	3급 이상 월 5만 원 4급 이상 월 3만 원 5급 이하 월 2만 원 근거: 보수규정	월 8만원 예산, 결산, 감사, 보수 등(행자부기준) 근거:보수규정	월 3만 원 - 시설안전관리자 근거:규정위임 (내부규칙)	월 3만 원 - 위험노출자 근거:규정위임 (내부규칙)	-	지배인 20만원 코너장 15만원 근거:보수규정
제주에너지공사	월: 80만 원 근거: 규정위임 (내부규칙)	사장: 100만 원 근거: 보수규정  부장:40만 원 팀장:30만 원 근거:규정위임 (내부규칙)	3급 이상 월 5만 원 4급 이상 월 3만 원 5급 이상:월 2만 원 근거: 보수규정	월 8만 원 예산, 결산, 감사, 보수 등(행자부기준) 근거:보수규정	월 3만 원 - 안전관리자 근거:규정위임 (내부규칙)	월 5만 원 - 위험노출자 근거:규정위임 (내부규칙)	-	-

### 3. 기본연봉 한계액

(단위: 천 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상한액	하한액												
□□□□공사	67,274	47,510	63,636	35,351	56,765	29,398	49,493	25,152	44,405	22,373	40,671	20,593	37,629	19,030
△△△△공사	67,950	37,080	63,500	34,650	54,900	28,410	50,400	26,640	45,190	25,350	35,330	23,900	-	-
제주에너지공사			68,757	35,146	59,453	28,549	54,401	25,810	49,230	22,922	45,479	20,753	-	-

### 4. 승진 가산금

(단위: 천 원)

구분	2급 -> 1급	3급 -> 2급	4급 -> 3급	5급 -> 4급	6급 -> 5급	7급 -> 6급
□□□□공사	4,940	7,055	5,383	3,510	2,727	2,309
△△△△공사	5,300	5,155	4,903	4,526	3,772	
제주에너지공사		5,594	5,321	4,912	4,093	

자료: 도내 3개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 내부규칙 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5】

# 감사위원회

## 주의요구·통보

제 목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과)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2회에 걸쳐 제주에너지공사의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처리 등 감독부서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감사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3. 7. 15.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2013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위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

였으며, 같은 해 10. 1. 제주에너지공사에 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 실시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3. 8. 13. 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중 “연봉 계약에 따른 경력산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감사위원회로 재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28. 감사위원회로부터 위 재심의 결과(이유 없음으로 기각결정)를 통보받았고, 같은 해 11. 8. 직원 개인이 공기업에 대한 이해와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자세를 제고하는 등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관서에 업무연찬 실시결과<sup>18)</su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하여 종합감사 결과 처리 여부를 수시 점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종합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3. 8. 14. 제주에너지공사가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자 위 「보수규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승인 요청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8. 13. 재심의를 신청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처분결과와 어긋나고 경력인정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도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승인처리 하였다.

그리고 난 후 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2013. 9. 12. 다시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자 위 관서에서는 위 「보수규정」 개정(안)이 종전의 안에서

---

18) 명목상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업무연찬이라고 하였으나 2013. 10. 24. 제주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시한 만찬 간담회 성격으로 개최하였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은 없음

동일한 분야, 상근경력, 20인 이상 등 주요 내용을 삭제하였고, 특히 신설 조항인 제5조2의 경우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 공사와의 합리적인 비교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승인처리 하였다.

그 결과 「보수규정」이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불합리하게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적용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까지 적용하여 금전적 혜택을 주는 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관서에서는 당연직 이사로 있는 ○○○○국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사항이고 제주에너지공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고, 승인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불승인하여야 하며, 더욱이 위 「보수규정」 개정(안)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어긋나고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에 대해서만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경력 재 산정 및 변상명령을 요구받은 3명 외에 4명까지 총 7명의 직원들에게까지 부적정하게 적용되어 금전적 혜택을 주게 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 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불합리하게 개정된 위 기관 「보수규정」 제5조2 및 경력환산표를 에너지 전문 공기업인 출범 취지를 반영하고 경력인정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통보)

②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의 직제, 인사, 보수 관련 규정 등 내부규정에 대하여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법령이나 타 시·도 사례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정 제·개정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 감 사 위 원 회

## 통 보

제 목 특별승진 심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에너지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4. 7.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급에서 2급으로의 특별승진 대상자 1명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특별승진자로 선발·확정하였다.

위 기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제26조에 따르면 사장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2항,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위 기관 「인사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관 「인사규정시행 내부규칙」 제18조의2에 따르면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 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특별승진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직원 모두에게 승진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적심사를 위한 객관적인 채점기준 및

검증 방법 등을 마련한 후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특별승진 후보자의 특수공적·직무 능력 등을 평가하고 채점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심사절차를 엄격히 정함으로써 심사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4. 6. 30. 승진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특별승진은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공적 심사를 거친다고만 명시하였을 뿐 특별승진 계획을 소속 직원에게 공지하지도 아니하였고, 특별승진자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검증 방법 등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7. 2. 사장이 구두로 특별승진 후보자로 ♡♡♡♡부장 을을 지명하여 공적요약서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 후 위 기관에서는 2014. 7. 3. 위 특별승진 후보자인 을의 공적에 대한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위 을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기술서에 의해 ‘적합’ 또는 ‘부적합’ 으로만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을을 특별승진자로 선발·확정하였다.

그 결과 특별승진이 투명성이 결여되고 공적에 대한 검증이나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이루어져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공기업인 △△△△공사와 □□□□공사의 경우도 위 기관처럼 「인사규정」에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사는 특별승진 사례가 없고, □□□□공사는 2012. 11. 16.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공헌한 하위직인 일반직 5급을 4급으로 한 차례만 승진시켰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2년 7월 설립된 지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위 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공적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단지 설립 2주년 기념으로 상위직급 보직자에 대하여만 특별승진 임용한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특별승진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모두에게 사전 공지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공적에 대한 검증방법을 마련하는 등 명확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 감 사 위 원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경력검증 등 업무 처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풍력발전 사업 및 각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5. 7. 9. 신규 일반직 6명과 경력직 1명 등 총 7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은 (주)☎☎☎☎에 위탁하고 3차 면접시험은 직접 시행하여 같은 해 9. 10. 신규 일반직 직원 6명을 채용하였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은 시험성적·근무성적·그 밖의 실증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관 「인사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을 할 때에는 경력직인 경우 신규 일반직과는 다르게 경력에 대한 실증결과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응시원서 제출 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경력을 검증하고 평정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 7. 9. 신규 일반직 6명과 경력직 1명 등 총 7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은 (주)\*\*\*\*\*에 위탁하면서 경력직인 경우 실제로 1차 서류전형 시 경력에 대한 실증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였고, 같은 해 8. 19. 3차 면접시험 당일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에 대하여 뒤늦게 경력평정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 후 위 기관에서는 면접당일 경력직 응시자 중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대로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여 최종 합격자로 처리하였고 2015. 8. 24. 합격자 통보를 한 후 뒤늦게야 위 \*\*\*\*\*가 제출한 경력증명 서류에 대한 조회결과 허위라고 판단<sup>19)</sup>하여 2015. 9. 2. 위 \*\*\*\*\*에게 다시 합격자 취소 처분 통보를 하였다.

그 결과 뒤늦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채용절차 상의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sup>20)</sup>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경력으로 응모한 선의의 경쟁자가 면접시험도 보지 못하고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경력 증명서 등을 경력검증을 소홀히 하여 응시자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경력직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고,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1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 따르면 위 \*\*\*\*\*의 재직기간 등이 허위임을 이유로 기각하였음

20) 위 \*\*\*\*\*는 “말도 안 되는 절차로 공채를 진행하면서 정보공개청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렴감찰관)에 고발하였고, 2015. 10. 10. 합격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상태임

【일련번호: 8】

# 감사위원회

## 통 보

제 목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효율화 노력 미흡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에너지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위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표 1]과 같이 작성하여 경영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표 1] 제주에너지공사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목	2015년	2014년	2013년	3개년 평균
I. 매출액	12,043,306,561	13,013,353,312	12,677,028,195	12,577,896,023
전력판매수익	9,083,008,561	11,625,341,206	11,690,327,036	10,799,558,934
REC판매수익	2,960,298,000	1,388,012,106	986,701,159	1,778,337,088
II. 매출원가	7,784,226,327	4,845,705,101	6,928,570,315	6,519,500,581
III. 매출총이익	4,259,080,234	8,167,648,211	5,748,457,880	6,058,395,442
IV. 판매비와관리비	2,271,759,169	2,024,701,189	1,706,101,513	2,000,853,957
V. 영업이익	1,987,321,065	6,142,947,022	4,042,356,367	4,057,541,485
VI. 영업외수익	1,741,230,327	612,346,247	70,114,388	807,896,987
VII. 영업외비용	3,784,999,912	3,037,362,773	652,252,304	2,491,538,330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56,448,520)	3,717,930,496	3,460,218,451	2,373,900,142
IX. 법인세	(868,170,336)	903,582,580	1,004,336,980	346,583,075
X. 당기순이익	811,721,816	2,814,347,916	2,455,881,471	2,027,317,068
매출원가율	64.64%	37.24%	54.65%	52.18%
매출총이익율	35.36%	62.76%	45.35%	47.82%
판매비율	18.86%	15.56%	13.46%	15.96%
영업이익율	16.50%	47.20%	31.89%	31.86%
당기순이익율	6.74%	21.63%	19.37%	15.91%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1. 매출원가 및 판관비율 지속 증가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 미흡

위 기관의 손익계산서 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매출원가율 및 판관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도 매출원가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변동이 없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설정액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율이 감소되었으며, 2015년도의 경우에는 ☆☆☆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증가액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에 대응되는 원가계상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인건비는 소폭 감소한 반면 광고선전비 및 연구개발비의 증가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였고, 2015년도는 인건비성 경비 및 지급수수료(S3D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기간 중 위 기관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sup>21)</sup>의 평균 손익계산서 비율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위 기관은 풍력발전업체 평균 비율보다 매출원가율(위 기관: 51.83% - 평균: 43.91% = 7.92%) 및 판관비율(위 기관: 15.91% - 평균: 4.44% = 11.46%)이 각각 7.92% 및 11.46% 만큼 높게 산정되어 평균 영업이익률(32.26%)이 풍력발전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56.37%) 보다 24.11% 만큼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위 기관의 매출원가 및 판관비에 포함되어 있는 연평균 인건비(급여 및

---

21) 풍력발전업체로서 최근 3개년(2013년~2015년) 연평균 손익계산서 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는 풍력발전을 통한 전력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전력판매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회사의 3개년(2013년~2015년) 간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음

퇴직급여) 비율은 9.28%로 풍력발전업체 평균 인건비 비율 3.14% 보다 6.14% 만큼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 개선과 인건비 및 기타비용 절감, 그리고 위기상황 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

[표 2] 풍력발전업체 손익계산서 비율

(단위: 천 원, %)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인건비율	영업이익율
가 풍력발전(주)	29,914,471	40.46%	2.15%	2.72%	57.39%
나 풍력발전(주)	7,101,258	43.60%	6.59%	2.95%	49.81%
다 풍력발전(주)	9,655,137	52.87%	6.74%	5.46%	40.38%
라 풍력발전(주)	9,592,202	33.88%	2.31%	1.50%	61.51%
㈜마 풍력발전	6,865,056	52.64%	6.12%	4.37%	77.23%
바 풍력발전(주)	9,527,697	40.00%	2.74%	1.83%	51.92%
<b>평균</b>	<b>12,109,303</b>	<b>43.91%</b>	<b>4.44%</b>	<b>3.14%</b>	<b>56.37%</b>
<b>제주에너지공사</b>	<b>12,577,896</b>	<b>51.83%</b>	<b>15.91%</b>	<b>9.28%</b>	<b>32.26%</b>
<b>차액(공사-평균)</b>		<b>7.92%</b>	<b>11.46%</b>	<b>6.14%</b>	<b>-24.11%</b>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자료 재구성

## 2.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위 기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 3]과 같이 이익금을 처분하고 있다.

[표 3] 제주에너지공사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

(단위: 천 원)

과 목	2015년	2014년	2013년
I. 미처분이익잉여금	827,691	2,815,970	2,501,622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970	1,622	45,740
당기순이익	811,721	2,814,347	2,455,881
II. 이익잉여금처분액	800,000	2,800,000	2,500,000
이익준비금	100,000	300,000	300,000
감채적립금	700,000	2,500,000	2,200,00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7,691	15,970	1,622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기관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익준비금(이익금의 10분의 1 적립) 및 감채적립금(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의 최소한 금액을 적립하고 난 후의 배당 가능한 적정한 이익금 내역은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4] 배당 가능한 이익금 내역

(단위: 천 원)

과 목	2015년	2014년	2013년
I. 이익금(당기순이익)	811,721	2,814,347	2,455,881
II. 적립금의 최소 적립금액	800,000	1,547,891	1,350,734
이익준비금	81,172	281,434	245,588
감채적립금	365,274	1,266,456	1,105,146
III. 최소 적립 후 배당가능한 이익금	365,274	1,266,456	1,105,146
IV. 공사 계상 배당가능한 이익금	27,691	15,970	1,622
V. 차액(III-IV)	337,582	1,250,486	1,103,524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2012. 10. 26. 제주특별자치도와 “현물출자의 공공성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위 협약서 제4조22)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풍력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현물출자 받은 풍력발전 설비에 대하여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이익금 및 신규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이익금에 대하여는 향후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적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현물출자의 공공성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서 제4조>

제4조(전력판매 수입금의 활용) (1) “을”은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시설물”로부터 발생하는 전력판매 수입금 중 국비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그 전액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재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아니한다.

(2) “을”은 예산편성 및 투자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을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적립하면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익준비금: 이익금의 10분 1, 감채적립금: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을 초과하여 적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배당가능 이익금이 2013년에 1,103,524천 원, 2014년에 1,250,486천 원, 2015년에 337,582천 원이 각각 과소하게 산정하였으며, 이익금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심도 있는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수익성 개선 및 인건비 등 비용절감으로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 및 신규 풍력발전 설비 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익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배당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 감 사 위 원 회

## 주의요구·통보

제 목 ○○ 풍력발전기 화재발생 사고조사 원인규명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UUUU팀, ◆◆◆◆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5. 7. 7. 13:00경에 발생한 위 기관 소유 ○○ 풍력발전기 1호기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태풍 등에 의한 2차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블레이드·로터·나셀 분리 등의 긴급조치를 완료한 후 화재 원인 규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합동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같은 해 7. 15. 10:30경 화재발생 장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원인 결과를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위 기관에서는 2015. 7. 7. 13:00경 화재 발생 후 위 풍력발전기 제작사와 현장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다음 날인 7. 8. 위 기관 소속 ◆◆◆◆팀장 갑과 제작사 연구원이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sup>23)</sup>하였고, 같은 해 7. 9.부터 7. 14.까지 5일 동안 2차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블레이드·로터·나셀 분리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였

---

23)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현장조사(2015. 7. 8. 화재발생 2일차)

- 1차 조사(06:30 - 08:00): 나셀 내부 통해 진입 및 조사, 철거를 위한 사전 안전점검

- 2,3차 조사(14:00 - 17:00): 크레인 이용하여 접근 및 조사

※ 조사결과: 내부 부품 등이 전소되어 주요부품 분리 후 지상에서 재조사 필요

으며, 같은 해 7. 14. 보험금 청구에 따른 ♠♠♠♠♠♠♠♠와 손해사정기관의 현장 확인 및 다음 날인 7. 15. 합동현장조사반 현장조사를 각각 실시한 후 같은 해 7. 16.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발생 합동 조사 실시 결과를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7. 24. 위 기관 이사회에 ○○ 풍력발전기 1호기에 대한 화재 발생 후 조치 및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위 기관의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 발생에 따른 합동 현장조사반 주요 조사 사항에 따르면 화재 현장 상태 점검 및 보존, 화재 현장에서의 2차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과 정확한 화재 원인 추정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밖에 화재 원인 규명 및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 발생에 대한 ☼☼소방서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화재현장 조사결과 로터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패드)의 급격한 마찰 열로 나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유리섬유 및 에폭시 재질의 나셀커버 및 블레이드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계공학적 설계 및 제조 부품의 작동원리 상의 오류는 향후 제주에너지공사의 추가 조사 의뢰 결정 및 제조사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전문가 구성 등 재조사<sup>24)</sup> 의지에 따라 설계, 부품에 의한 작동 오류가 밝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위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위해 합동 현장

---

24) 제주자치도에서는 ◎◎풍력발전단지 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2호기(V42-600kW)가 2010. 10. 25. 15:14경 블레이드 파손, 화재발생, 발전기 추락, 타워 굴절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규명을 위하여 2010. 11. 2.부터 2011. 1. 31.까지(3개월) ☆☆☆☆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 풍력발전기 화재 및 파손 원인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원인 분석 등에서 규명된 사실을 국내 풍력산업기술 발전에 활용을 목적으로 화재발생의 원인을 조사한 내용을 수록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함.

조사반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 발전기의 제작사를 조사반이 아니라 입회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합동현장조사반은 화재 원인 추정과 그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 추정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여부 및 화재 원인 규명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합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합동현장조사반 명의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동 현장조사반을 구성하면서 풍력발전기 제작사를 합동현장조사반에 포함하였고, 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위 조사반이 화재 현장 조사 후 제시한 화재원인에 대한 의견 내용만으로 조사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화재 원인을 결론 내는 등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화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종결<sup>25)</sup> 하였다.

그 결과 풍력발전기 화재 발생 원인이 풍력발전기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화재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한 논란을 야기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① 화재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사고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25) ○○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 사고 원인 조사결과 발표 후 한국◆◆◆◆공제회 회원 피해 보상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2015. 8. 26.)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풍력시설 공제금 금 1,405,763천 원을 수입 조치함

바라며(통보)

② 앞으로 풍력발전기의 화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동종 유사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풍력발전기 화재원인 규명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 풍력발전기 화재원인 규명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전 제주에너지공사 파견)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 감사위원회

## 시정요구·권고

제 목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부가급여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위 기관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각종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1. 부장급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원 및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직제규정」 제4조 및 제5조, 「위임전결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부장급 보직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직원의 근태관리 및 근무상황 보고를 위해 휴가신청을 승인하고 시간외 및 휴일근무를 명령하는 관리자에 해당한다.

또한, 위 기관 「취업규정」 제68조(적용의 제외) 제1항에 따르면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직에 있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직책수행비를 받고 있는 2급 이상 부장급 보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4. 7. 10. 일반직 2급으로 특별승진하여 ◀◀◀◀◀ 기술센터장(전 ♡♡♡♡부장)의 직위에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을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데도 위 을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17,112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부장급 보직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시간외근무수당 17,112천 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기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견 온 부장급 보직자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었고, 위 을의 경우 2급으로 승진은 했으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급으로 재직할 때 보다 급여가 적어진다고 판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관 「취업규정」에도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직에 있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도내 공기업인 □□□□공사와 △△△△공사인 경우 2급 이상 보직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위 을은 위 기관 소속 직원 중 임원인 사장을 제외한 최고 직위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최종결재 하는 등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적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관계규정을 위배하여 보수 보전을 목적으로 2급 이상 부장급 보직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불합리

위 기관에서는 2015년도에 시간외 근무명령에 의하여 매월 30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위 기관 「보수규정」 제5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내부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는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매월 1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인정하며, 평일은 19:00이후 4시간, 휴일은 4시간 한도로 인정하되, 관련규정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시간 한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위 기관을 포함하여 도내 3개 공사에 통보한 「201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자체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참고하여 단가를 산정하되, 휴무일에 시간외근무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되, 통상임금 제도를 위 기관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위 기관의 초과근무 형태가 사무실 내근에 따른 초과근무이므로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수당 지급을 지양하고, 직책수행비를 지급받는 팀장급 이상 직원과 하위 직원간의 적정한 근무시간 조정<sup>26)</sup>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30시간 범위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급액도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도가 직위·직급 간에 인정시간은 같으면서도 지급액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 3. 각종 부가급여 지급기준 불합리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각종 수당은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에 따라 도내 3개 공사에 통보한 201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자체지침에 따르면 인건 비 및 수당은 반드시 공사 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규정에 지급대상, 지급액 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임의로 정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급여성 성질의 모든 수당은 이사회 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는 「보수규정」에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명확히 정하고, 「보수규정시행내부규칙」에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과 절차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보수규정」에 정하여야 할 직책수행비 및 법정필수요원

---

26) □□□□공사는 2015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4급 중 보직이 없는 자에게는 15시간, 그 이하 적은 20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공사는 2016. 6월부터 4급 이상 팀장은 12시간, 5급은 20시간, 6급 이하는 25시간을 적용하고 있음.

수당과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월 지급액을 [별표 2] “수당지급 기준표”와 같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보수규정시행내부규칙」에 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보수규정시행내부규칙」에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규정되어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 4. 각종 부가급여 병급 규정 미도입

위 기관 「보수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직원에게는 직위 및 직무,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별표 1] “직원의 부가급여 지급률 기준표”와 같이 각종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보수규정시행내부규칙」에 [별표 2] “수당지급기준표”와 같이 세부 집행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기관 「보수규정」에 따른 부가급여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운영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 기준에 따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 결산, 회계, 계약, 감사, 경영평가 실무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게 지급하되, 개별 공기업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자체 내부기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별표 3] “지방 직영기업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기준”과 같이 지방 직영기업의 경우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상호간에는 병급이 불가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병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따로 병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책수행비를 지급받고 있는 팀장급 이상에 대해 다른 부가급여 병급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보수규정」에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다른 유사한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병급 가능 또는 제한하는 사항을 지방 직영기업 등의 유사 사례를 검토 비교하여 위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각종 부가급여를 지급하면서 직책수행비를 지급받고 있는 팀장급 이상에게도 병급 제한규정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도 「보수규정」에 세부적인 지급대상을 정하지 아니한 채 ♥♥♥♥♥부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어느 하나의 사무에만 해당되면 지급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부가급여 중 일부가 병급 제한 및 지급대상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지 않는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적정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도내 3개 공사에 매년 통보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자체지침」에 법원의 판결과 감사기관의 감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대상자를 명확히 정하고, 각종 부가급여 지급에 대한 병급 제한에 대해서도 지방직영기업 등의 사례를 비교하여 위 3개 공사의 「보수규정」에 지급대상과 지급액, 병급 제한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제주에너지공사 병급제한 규정시 고려사항

직위 \ 부가급여	직책수행비	자격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법정필수 요원수당	특수업무 수당	비고
팀장 이상(4급 이상)	○	×	×	×	×	
팀장(5급, 행정·기술직)	○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지급	×	×	×	
팀장 미만(행정직)	×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지급	80,000	×	×	
팀장 미만(기술직)	×	○	×	택 일		

- 직책수행비를 받는 팀장급 이상의 경우 4급 이상은 병급제한, 5급의 경우 자격수당만 요건구비 시 지급
- 특정업무수당 상호간에는 자격수당을 제외하고는 그 중에서 택일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간외 근무확인시스템을 갖추는 방안과 직급 간 인정시간 차등 조정 및 상위직급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에 대한 사무의 내용 및 지급대상에 대한 범위 등을 「보수규정」에 세부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권고)

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기술센터장(전 ♀♀♀♀부장) 을에게 지급한 17,112천 원을 회수 조치하며,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수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1】**

**직원의 부가급여 지급률 기준표 (「보수규정」 제32조 관련)**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지 급 대 상
직 책 수 행 비	· 내부규칙에서 정한 금액	· 본부장급, 부장급, 팀장급(책임연구원)
기 술 수 당	· 3급이상 : 월 50,000원 · 4급이상 : 월 30,000원 · 5급이하 : 월 20,000원 ※ 기술직에 한함	·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 월 50,000원, 기능장기사 월 30,000원, 산업기사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 운전직 : 월 40,000원	· 월 40,000원 이하. 다만,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직원, 조종이 용이한 소형의 중기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자동차정비(기기정비를 포함한다)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월 20,000원 이하를 지급
	·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관련분야) : 월 100,000원	· 공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인지의 여부판단은 급여담당부서에서 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가 족 수 당	· 내부규칙에서 정한 금액	· 부양가족 4인 이하 (단, 자녀는 제한 없음)
자 녀 학 비 당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비 전액	· 제한 없음
법 정 필 수 당	· 내부규칙에서 정한 금액	·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직원
특 수 업 무 수 당	· 내부규칙에서 정한 금액	· 제5조제3항제8호에서 정한 직원
육 아 보 조 수 당	· 해당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0%	· 임·직원(매월)
대 우 수 당	· 인사규정상 직급대우인 경우	· 보수규정 제5조에 의함
일 · 숙 직 수 당	· 내부규칙에서 정한 금액	· 일·숙직근무를 한 직원
시 간 외 근 무 수 당	· 통상임금×1.5/209×시간	· 직원
야 간 근 무 수 당	· 통상임금×0.5/209×시간	· 근로기준법에 의함
연 차 수 당	· 통상임금×1/209×8시간 ×일수	· 근로기준법에 의함
특 정 업 무 수 행 동 수 비	· 월 8만원 예산,결산,회계,감사 등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장 기 근 속 수 당	· 별표6의 장기근속수당 계산기준표	

**【별표 2】**

**수당지급 기준표(「보수규정시행내부규칙」 제6조 관련)**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또는 지급금액	비 고
직책수행비 (신설, 2012. 12. 12.)	본부장급, 부장급, 팀장급 (책임연구원)	• 본부장급, 부장급, 팀장급(책임연구원)	• 본부장급 500,000원 • 부 장 급 400,000원 • 팀 장 급 300,000원 (책임연구원)(개정 2014.03.25.)
가족수당	임원 및 직원	• 배 우 자: 월 40,000원 • 기타가족: 1인당 월 20,000원	• 4인 이내 (단, 자녀의 경우는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 셋째자녀부터 월80,000원 가산금 추가 지급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3만원씩)
자녀학비보조수당	임원 및 직원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취학자녀
일·숙직 수당	직원	• 일직비: 1일당 50,000원 (개정 2013.06.26.) • 숙직비: 평일1야당 30,000원 : 휴일1야당 40,000원	•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급
법정필수요원 수당	직원	• 월정액 30,000원	• 법정필수요원으로 지정되어 당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특수업무수당	직원	• 월정액 50,000원 (개정 2012. 12. 12.)	• 근무자 중 위험에 노출된 현장근무자
을중 (삭제 2013. 09. 02.)			

**【별표 3】**

**지방 직영기업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기준(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구분	대상	지급액(1인/월)
① 공기업종사 공무원	○ 자치단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종사 5급 이하 공무원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범위, 지급액(8만원 한도) 조정 가능 ○ 자치단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종사 청원경찰 ○ 경영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써 5급 이하 실무담당공무원 (사업소장, 과장 제외)	80,000원  30,000원 80,000원
② 요금과징 담당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 시군본청, 구청의 검침원 등 요금과징업무실무담당 공무원(5급 이하 공무원)	80,000원
③ 누수관련업무 담당공무원	○ 누수탐사, 누수수리업무 담당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80,000원
④ 수도계량기 과리담당공무원	○ 계량기수급, 수선, 교체업무 직접 담당 공무원(5급 이하 공무원)	80,000원
⑤ 경영평가 실무 담당공무원	○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 담당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80,000원
⑥ 예산·결산·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 본청 예산·결산·계약업무 담당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계약업무 직접담당공무원	80,000원 80,000원
⑦ 공무원단체 업무 담당공무원	○ 상하수도사업본부 공무원단체업무 직접담당 공무원	80,000원

- 주) 1.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일반회계의 대민활동비 병급 불가. 단,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와 병급 지급 가능
2. ①항의 공기업종사공무원 특수활동비와 ②·③·④·⑤·⑥·⑦항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병급 가능  
※ ②·③·④·⑤·⑥·⑦항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업무의 겹치시 상호 병급이 불가하며, 동일업무를 분장 수행 하더라도 주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만 지급 가능
3. 요금과징업무에 대해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불가
4. 상하수도사업본부 감사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감사담당공무원 지급기준적용 가능
5.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②, ③, ④항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 가능
6.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성격의 활동지원비(월 8만원 범위내 지급 가능)는 307-13 (민간검침원 활동 지원비) 과목에 편성
7.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가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가능
8.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병급 지급 불가**

【일련번호: 11】

# 감 사 위 원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에 따른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UUUU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3. 9. 9.부터 2014. 3. 5.까지 공사 설립목적과 ‘제주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 및 재단법인 ☼☼☼☼☼☼☼과 “제주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계약(계약금액: 90,000천 원)을 맺어 용역결과를 납품받았다.

위 기관 「정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전 및 목표와 실천전략을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선도하는 최고의 창조적 공기업으로서 2020년까지 육상풍력 130MW와 해상풍력 100MW를 시설하고 이용률을 육상풍력은 25%, 해상풍력은 35%를 각각 달성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보고서의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육상풍력 사업에 치중하며 집단에너지 사업기획 등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중심으로 성능평가, O&M(Operation & Maintenance, 운영&유지) 등 풍력 관련 사업의 다각화, 태양광, 집단에너지, 폐기물 등 신규 사업을 지속 창출하며,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컨트롤 및 제주지역 사업과 에너지를 융합한 종합사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단계별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보고서가 위 기관의 향후 나가야할 운영방침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등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별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 등이 중장기 발전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위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 하였으며, 2014. 6. 2. 중장기 발전전략 세부추진계획 수립 워크숍을 개최하면서도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아니한 채 2014년도 사업추진 내용 및 일정에 대해서만 검토하여 개략적인 내용만 작성하였다.

그 결과 중장기 발전전략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이 실효성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전략도

같이 보완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중장기 사업에 대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 감 사 위 원 회

## 시 정 요 구

제 목 ☆☆ 풍력발전기 제조·구매 설치에 따른 기술 지원 및 교육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4. 6. 18. 주식회사 ❖❖❖❖과 제주시 구좌읍 소재 \*\*  
번지 일원에 2MW 풍력발전기 15기(총 30MW)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계약(42,454,730천 원)을 맺  
어 2015. 8. 31. 준공처리하였다.

위 기관의 제주 ☆☆ 풍력발전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  
2014-5호)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사항으로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론 및 실무에 능통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지원자<sup>27)</sup>를 성능시험 기간을 포함한 보증기간(5년) 동안 현장에 파견하고,

27) 기술 지원자의 주요역무

-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의 제시
- 문제점 파악, 대책수립 및 해결방안 제시
-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현장교육
- 풍력발전 유지정비 시 발주자 지구인과 동행하여 수행하며 발주자 직원에게 유지정비 기술 전수
- 풍력발전 유지정비 후 발주자에게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 소프트웨어 피라미터 업그레이드 관련 정보 제공

발주자와 상호 합의한 인원에 대하여 연수목적에 부합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제조·구매 설치 계약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 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 기술이전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본사 ◆◆◆◆팀(전기 3명, 기계 4명)과 ☒☒☒☒☒☒☒(전기 2명, 기계 2명) 인력을 무상보증기간(5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기관 소속 직원에게 기술이전을 위한 현장교육과 특별교육을 총 62일 이상 실시하여 무상보증기간 종료 시 위 기관의 기술 수준을 제조사의 80% 수준으로 O&M(운전 및 정비)기술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 풍력발전기 제조·구매 설치 계약 내역서에 따르면 기자재비 및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모든 비용(운송비, 보험료, 종합시운전, 성능시험기간을 포함한 최소 5년 이상 주요부품 무상보증 및 정기점검·소모품 포함 O&M비용, 입찰자가 제시한 무상보증과 O&M기간 후 2년 동안 예비품 및 특수공구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 풍력발전기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 풍력발전기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기술이전 및 직원교육 계획과 현장에 파견할 기술지원자에 대한 현장배치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기술이전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및 기술지원자의 현장 파견을 확약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5. 8. 31.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하여 준공처리를 하였으면서도 2016. 4. 27. 감사일 현재까지 기술지원자의 현장파견이나 기술이전을 받기 위한 직원교육 계획에 대한 검토·승인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결과 풍력발전기가 기술지원자의 현장파견이나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이 안 되어 무상보증기간(5년)이 지날 경우 기술인력 부재로 고장 발생 시 정비 지연 등으로 가동률 저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 풍력발전기 제조, 구매설치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보증기간(5년) 동안 기술지원자의 현장파견 및 기술이전 직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승인하고 위 계획서에 따라 기술지원자의 현장파견과 기술이전을 위한 직원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 감사위원회

## 주의요구

제 목 예산 성과금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에너지공사(☞☞☞☞팀)

내 용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표]와 같이 위 기관이 2012년도와 비교하여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었다는 사유로 2014년도에 사장 및 전 직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표] 2014년도 예산 성과금 지급 사유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증가율	비고
영업이익	△246	4,042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221	2,456	1,102%	

자료: 제주에너지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예산 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운영하고,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운영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 내(1인당 100만 원 이내), 수입목표 초과분의 10% 범위 내(1인당 100만 원 이내)

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방법은 관련 업무에 기여한 공이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지급하며 기여한 자가 다수일 때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예산 성과금 지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 기간이 같은 동일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지급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지급 시에도 관련 업무에 기여한 공이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12년도의 경우 공사 출범 이후 6개월 정도 사업수행 기간이 소요되어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2013년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예산 성과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팀별로 제출한 일반적인 주요업무 및 주요성과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전 직원 총 26명에게 적게는 930,000원부터 많게는 990,000원 등 계 23,886,080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예산 성과금이 동일여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반기와 1년 동안의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사실상 전 직원에게 차등 없이 골고루 지급하는 등 예산 성과금 지급제도 운영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결산 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하여 지급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